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한국어 허락 화행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조연수

# 한국어 허락 화행 연구

지도교수 문 숙 영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조 연 수

조연수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전 영 철 (인)

부위원장 박 진 호 (인)

위 원 문 숙 영 (인)

## 한국어 허락 화행 연구

조 연 수

본 연구는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essential condition)’과 ‘의도성 상태(intentional state)’, ‘갱신 잠재성(update potential)’을 살핍으로써 허락 화행이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임을 밝히고, 한국어에서 허락 화행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락 화행은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시 화행이 청자의 행위 수행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허락 화행은 청자의 행위 수행에 존재하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청자가 해당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허락 화행은 화행 판별의 기준이 되는 의도성 상태와 갱신 잠재성의 측면에서도 지시 화행과의 차이를 보이므로 허락 화행을 지시 화행과 구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2장에서는 허락 화행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1절에서는 화행과 발화 행위, 발화수반력, 발화 효과의 개념을 살핍으로써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화행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허락 화행의 판별에 앞서 Leech(1983)을 중심으로 화행의 주요 유형을 살폈다. 또한 단언 화행의 두 부류를 ‘기술 화행’과 ‘주장 화행’으로 나누어 살핍으로써 허락 화행이 보이는 두 가지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2절에서는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의 개념을 살피고, Searle(1975)의 관점에 따라 ‘협력의 원리’와 ‘화행의 적정 조건’을 기반으로 한 간접 화행의 해석 과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화행이 직접성과 간접성의 정도를 가짐을 확인했다. 또한 허락 화행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살피며 한국어에 허락문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한국어의 허락 화행은 평서문의 ‘-어도 되다’를 통해 실현될 때 직접성이 가장 높음을 보였다.

2.3절에서는 허락 화행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Searle(1969)의 ‘본질 조건’, Searle(1983)의 ‘의도성 상태’, Portner(2018)의 ‘갱신 잠재성’의 개념을 살폈으며, 화행의 주요 유형인 단언 화행과 지시 화행의 본질 조건, 의도성 상태, 갱신 잠재성을 제시했다.

3장에서는 2.3절에서 제시한 화행 판별의 기준을 적용하여 허락 화행을 정립했다. 3.1절에서는 맥락의 변화를 고려하여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을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화자의 시도’로 규정하였고, 이때의 장애물을 ‘금지로 인한 장애물’과 ‘무지로 인한 장애물’로 나누어 살폈다. 3.2절에서는 허락 화행의 대상이 되는 명제 내용의 특징과 함께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를 살폈다. 허락 화행의 명제 내용은 기정의 사실이고,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는 단언 화행의 의도성 상태와 동일한 ‘믿음’임을 보였다. 3.3절에서는 허락 화행이 갱신하는 맥락의 유형이 단언 화행이 갱신하는 맥락의 유형과 동일한 ‘공통기반’임을 주장했다.

4장에서는 허락 화행의 실현 양상을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으로 나누어 살폈다. 허락 화행은 평서문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허락 화행의 직접성이 가장 높은 언어 형식으로는 [허락]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우언적 구성 ‘-어도 되다’와 수행 동사 ‘허락하다, 허가하다’를 제시했다.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되는 [능력], [가능]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을 수 있다’와 ‘가능하다’는 [허락]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언어 형식보다 청자의 추론을 더 많이 필요로 하므로 화행의 직접성이 다소 떨어진다.

명령문 혹은 의문문을 통해 실현되는 허락 화행은 평서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보다 더 많은 맥락 요인의 개입과 청자의 추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행의 간접성이 높다. 허락 화행이 명령문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 ‘청자에게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믿음’, 혹은 ‘청자가 해당 행위를 수행하기를 소망한다는 화자의 믿음’이 맥락 요인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명령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 중에는 선행절에 허락 화행이 할당되는 경우도 있다. 선택지 나열의 기능을 하는 ‘-든지/-든가/-거나’와 범위를 특정하는 연결어미 ‘-되’가 선행절에 할당되는 허락 화행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을 살폈다.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은 청자의 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단언 화행이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허락 화행이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지시 화행은 판정/설명 의문문과 같이 청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일반 의문문으로 쉽게 실현되기 때문에 허락 화행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요어 : 허락 화행, 문장 유형, 본질 조건, 의도성 상태, 갱신 잠재성

학 번 : 2020-20576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과 의의 .....	1
1.2. 선행 연구 .....	5
1.3. 논의의 구성 .....	7
2. 기본적 논의 .....	9
2.1. 화행의 종류와 허락 화행 .....	9
2.1.1. 화행의 개념과 종류 .....	9
2.1.2. 단언 화행의 두 부류와 허락 화행 .....	13
2.2. 직접/간접 화행의 정도성과 허락 화행 .....	16
2.2.1.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의 정도성 .....	16
2.2.2. 허락 화행의 직접성과 간접성 .....	20
2.3. 화행 판별의 기준 .....	23
2.3.1. Searle(1969)의 본질 조건 .....	23
2.3.2. Searle(1983)의 의도성 상태 .....	28
2.3.3. Portner(2018)의 갱신 잠재성 .....	31
3. 허락 화행의 정립 .....	33
3.1.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 .....	33

3.1.1. 금지로 인한 장애물 .....	41
3.1.2. 무지로 인한 장애물 .....	43
3.2.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 .....	45
3.3. 허락 화행의 갱신 잠재성 .....	51
4. 허락 화행의 실현 양상 .....	54
4.1. 평서문의 허락 화행 .....	54
4.1.1. -어도 되다 .....	54
4.1.2. -을 수 있다 .....	63
4.1.3. 어휘적 실현 .....	70
4.2. 명령문의 허락 화행 .....	73
4.2.1. 명령문 .....	73
4.2.2. -든지/-든가/-거나 .....	76
4.2.3. -되 .....	80
4.3. 의문문의 허락 화행 .....	83
5. 결론 .....	88
참고문헌 .....	91
Abstract .....	95

## 표 목 차

[표 2-1] Leech(1983: 211)의 화행 범주와 대화 참여자의 심리 상태 .....	13
[표 2-2] Fraser(1975: 191)의 단언 화행의 두 부류 .....	14
[표 2-3] Searle(1975: 72)의 간접 지시 화행의 생산 방법 .....	18
[표 2-4] Searle(1975: 73-74)의 간접 지시 화행의 해석 과정 .....	18
[표 2-5] Searle(1969)의 적정 조건 .....	24
[표 2-6] Searle(1969: 57-71)의 요청, 단언, 약속 화행의 적정 조건 .....	26
[표 2-7] Searle(1983)의 단언과 지시의 의도성 상태와 부합 방향 .....	29
[표 2-8] Kissine(2013)의 단언과 지시의 의도성 상태와 잠재성 .....	30
[표 2-9] Portner(2018: 181)의 구조화된 담화 맥락 .....	31
[표 3-1] Panther & Thornburg(1998)의 요청 화행 시나리오 .....	34
[표 3-2] 이동혁(2016: 33-34)의 허락 화행 시나리오 .....	35
[표 3-3] 허락 발화 이전과 이후의 맥락 요인 .....	39
[표 3-4] 허락 화행에서 청자가 갖는 장애물의 유형 .....	41
[표 3-5] 허락, 단언, 지시 화행의 의도성 상태와 명사형 어미 .....	51
[표 3-6] 지시, 단언, 허락 화행이 갱신하는 맥락 유형과 청자의 행위 수행 .....	53
[표 4-1] ‘-어도 되다’가 수행하는 다양한 화행 .....	59
[표 4-2] 이동혁(2015: 8)의 ‘-어도 되다’의 인접 쌍 환경 .....	60
[표 4-3] ‘-을 수 있다’가 수행하는 다양한 화행 .....	67

## 그 립 목 차

[그림 1]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의 정도성 .....	19
[그림 2] 장애물 유형에 따른 허락 화행의 범주적 위치 .....	45



# 1. 서론

## 1.1. 연구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화행의 ‘본질 조건(essential condition)’, ‘의도성 상태(intentional states)’, ‘갱신 잠재성(update potential)’을 기준으로 허락 화행의 특징을 살핌으로써 허락 화행이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임을 밝히고, 허락 화행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행의 종류는 문장 유형의 종류보다 훨씬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문장 유형이 존재하는 주요 화행(basic/main types)에 대한 연구에 비해 주변 화행(minor types)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sup>1)</sup> 허락 화행은 범언어적으로 허락문의 문장 유형이 존재하지 않아 주변 화행에 속하며, 허락 화행을 중점적으로 다룬 국외의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어 연구에서도 허락 화행에 대해 단독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지시 화행 연구의 일환으로 허락 화행을 다룬 연구가 일부 있을 뿐이다.

이지수(2016)에서는 허락 화행이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된다는 점을 들어 허락 화행을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제시했으며, 김강희(2018)에서는 허락 화행의 담화 분석 결과, 허락 화행 이후 청자의 행위가 실제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허락 화행을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분석했다. 이지수(2016), 김강희(2018)은 모두 허락 화행이 청자의 행위 수행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허락 화행을 지시 화행의

---

1) 문장 유형과 화행은 일대일의 대응을 이루지 않지만, 특정 문장 유형은 특정 화행과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 특정한 문장 유형과 강하게 연결되는 화행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화행의 유형을 주요 화행(basic types, main types)이라 한다. 주요 화행의 종류로는 명령문과 연결되는 지시 화행, 평서문과 연결되는 단언 화행, 의문문과 연결되는 질문 화행이 있다. 주변 화행(minor types)은 해당 화행을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문장 유형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언약 화행, 감탄 화행 등이 주변 화행에 해당된다.

하위 유형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허락 화행은 지시 화행과는 다르게 청자 행위 수행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지시 화행은 해당 발화가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되지만, 허락 화행은 청자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을 제거해줌으로써 청자가 해당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허락 화행 이후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되는 것은 청자의 '선택'이다.

또한 허락 화행은 화행 판별의 기준이 되는 Searle(1983)의 '의도성 상태'와 Portner(2018)의 '갱신 잠재성'의 측면에서도 지시 화행과 차이를 보이며, 단언 화행과는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을 밝히고,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와 '갱신 잠재성'을 살핌으로써 허락 화행이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일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발화가 허락 화행임을 결정하는 허락 화행의 성립 조건을 Searle(1969)에서 제시한 '본질 조건'을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질 조건'은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된 발화 행위의 객관적인 효과'를 의미하며, '본질 조건'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화행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조건이다. 그런데 발화로 인한 다양한 효과들 중에서 어떤 효과가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된 본질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맥락의 변화와 관련하여 Searle(1969)의 '본질 조건'을 설명할 것이다. 발화 전의 맥락에서 발화 이후의 맥락으로 나아갈 때 변화하는 조건이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된 본질 조건임을 설명하고, 이처럼 맥락을 변화시키는 본질 조건은 해당 화행의 성립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맥락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은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화자의 시도'이다. 허락 발화 이전의 맥락에서 허락 발화 이후의 맥락으로 변화할 때 바뀌는 요인이 바로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이 되는데, 허락 화행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던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은 다양한 발화 효과 중에서 장애물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결정된다.

둘째, 허락 화행이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임을 밝힐 것이다. 이때 단언 화행은 ‘기술하다, 설명하다, 말하다’와 같은 기술 화행과 ‘주장하다, 동의하다, 결론짓다’ 등의 주장 화행을 포함하는 범주로서, Leech(1983)의 화행 범주를 따를 것이다. 허락 화행이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화자의 ‘의도성 상태’와 발화의 ‘갱신 잠재성’을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다.

화자의 의도성 상태는 Searle(1983), Kissine(2013)을 비롯한 기존의 화행 분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왔다. Searle(1983)에 따르면 화자의 의도성 상태는 화자가 해당 발화를 하는 원인이 되는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 소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단언 화행의 화자는 특정 명제가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지시 화행의 화자는 청자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다.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는 단언의 의도성 상태와 동일한 ‘믿음’임을 밝힐 것이다.

갱신 잠재성은 Portner(2018)에서 화행 분석의 기준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이때 갱신 잠재성이란 발화가 발화 이후의 맥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발화가 무엇을 어떻게 갱신하느냐에 따라 화행의 종류가 나뉠 수 있다. 단언은 화자와 청자의 공통기반(common ground)을 갱신하며, 명령은 청자의 행위 목록(to-do-list)을 갱신한다. 허락 화행은 기존의 맥락에 ‘청자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화자와 청자의 공통기반을 갱신한다는 점에서 단언 화행과 유사하다.

셋째, 허락 화행이 실현되는 양상을 살필 것이다. 한국어에는 허락문의 문장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락 화행은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의 문장 유형을 통해 실현된다. 허락 화행은 평서문으로 실현될 때 화행의 직접성이 가장 높으며, 명령문으로 실현될 경우 다양한 맥락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행의 간접성이 높아진다. 또한 허락 화행이 의문문으로 실현될 경우에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단언 화행이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양상과 유사하며, 지시 화행이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일반 의문문으로 빈번하게 실현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에서 허락 화행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형식은 평서문으로 실현되는 우연적 구성 ‘-어도 되다’이다. ‘-어도 되다’를 통해 실현되는 허락 화행의 직

접성이 가장 높은 이유는 ‘-어도 되다’가 [허락]의 양태 의미를 가지며,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청자의 추론이 가장 적게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도 되다’는 한국어에서 허락 화행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언어 형식으로 기능한다.

평서문으로 실현되는 우연적 구성 ‘-을 수 있다’는 [가능], [능력]의 양태 의미를 가진다. ‘-을 수 있다’는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특정 맥락에서 청자의 추론을 통해 허락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청자의 추론이 개입하는 만큼 ‘-을 수 있다’가 수행하는 허락 화행은 ‘-어도 되다’가 수행하는 허락 화행보다 간접성이 높다. 그러나 [가능], [능력]의 양태 의미는 ‘청자의 행위 수행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인 ‘장애물의 제거’와 연결될 수 있다. ‘-을 수 있다’가 수행하는 허락 화행은 전적으로 맥락 정보에 의지하는 명령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보다는 청자의 추론을 덜 요구하므로 화행의 직접성이 높은 편이다.

명령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은 평서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에 비해 많은 맥락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화행의 간접성이 높다. 모든 명령형 종결어미가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발화 이전에 ‘청자에게 행위 수행의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화자의 믿음’, 또는 ‘청자가 해당 행위를 수행하기를 소망한다는 화자의 믿음’ 등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허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명령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 중에는 선행절에 허락의 발화수반력이 할당되는 경우도 있다. 선택지를 나열하는 어미 ‘-든지, -든가, -거나’와 화자가 부여하고자 하는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는 연결어미 ‘-되’는 청자의 추론을 통해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허락 화행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을 살필 것이다. 허락 화행은 ‘안 되기는 왜 안 돼?’ 구성과 ‘-을 수 없기는 왜 없어?’ 구성의 수사 의문문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허락 화행이 청자의 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으로만 수행되는 양상은 단언 화행이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양상과 유사하다. 지시 화행은 청자의 답을 요구하는 일반 의문문으로 쉽게 실현될 수 있다.

## 1.2. 선행 연구

화행의 종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나 대체로 Searle(1969)의 분류를 벗어나지 않는다. 화행 이론의 시초라 할 수 있는 Austin(1962)에서는 발화를 판정발화(Verdictives), 행사발화(Exercitives), 언약발화(Commissives), 행태발화(Behabitives), 평서발화(Expositives)로 나누었으며, Austin(1962)의 논의를 구체화한 Searle(1969)에서는 단언(Assertives), 지시(Directives), 언약(Commissives), 표현(Expressives), 선언(Declaratives)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Austin(1962: 152)에서 특정 발화가 위의 범주 중 여러 개에 해당되거나 어느 범주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했듯이 화행의 범주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모든 화행을 단일한 층위에서 범주화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화행을 원형적 범주화 이론에 입각하여 범주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때 허락 화행은 해당 발화가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주로 명령, 요청, 청유, 금지 등과 함께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다루어져 왔다.

Davies(1986: 41)에서는 기존의 지시 화행의 정의인 ‘청자 행위의 이유를 제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 혹은 태도’의 개념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인 허락 화행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허락 화행까지 포괄할 수 있는 명령문(imperative)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했다. Davies(1986: 47-49)은 평서문(declarative)의 의미는 명제를 단언하는 것이고 명령문의 의미는 명제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avies(1986)은 허락 화행의 특이점을 언급했으나 지시 화행의 개념을 수정함으로써 허락 화행을 지시 화행에 포함시켰다.

Hindelang(1982)에서는 지시 화행 체계 속에 언약 화행을 위치시키고, 언약 화행 아래에 허락 화행을 두었다. 이러한 분류는 언약 화행 아래에 허락 화행을 두었다는 점에서 특이하지만, 허락 화행이 결국 큰 틀에서는 지시 화행에 속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다르지 않다.

이준희(2000: 40)에서는 허락 화행을 명령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보고 허락 화행을 위한 문법 표지로 ‘-려무나’를 제시했다.<sup>2)</sup> 이준희(2000)은 허락 화행이 명령 화행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화행인지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기존의 화행 분류를 따르

면서 각 화행이 어떠한 형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살폈다.

고대영(2014)는 요청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명령, 요청, 부탁, 허락, 충고 화행을 제시하고, 수행자, 지배력, 수혜자 변인에 따라 각각의 화행이 결정됨을 보였다. 수행자 변인은 미래의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의미하며 화자와 청자로 나뉜다. 지배력 변인은 화자와 청자의 권위를 의미하며, 수혜자 변인은 미래 행위의 결과로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대영(2014)에서는 허락을 요청 화행의 하나로 보며, 행위의 수행자와 수혜자가 청자이고, 화자의 지배력이 청자의 지배력보다 더 높은 화행으로 기술했다. 허락을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보되, 지시 화행에 속하는 다른 화행들과 가지는 차이를 살핀 것이다.

이지수(2016)에서는 Davies(1986: 41)에서 제시된 ‘청자 행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허락 화행을 정의하고, 청자 행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청자 행위의 이유가 된다는 점을 들어 허락 화행을 ‘지시의 힘’이 약한 지시 화행으로 보았다. 또한 명령문의 매개변수를 바람, 능력, 힘, 비용, 화자 이익, 청자 이익, 의무로 설정하여 각 매개변수의 유무에 따라 명령문이 수행하는 지시 화행을 분류했는데, 허락은 ‘±바람, +능력, +힘, ±비용, ±화자 이익, +청자 이익, ±의무’의 특성을 가지는 화행으로 분석했다.

김강희(2018)에서는 허락 화행과 지시 화행이 실현되는 담화 상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허락 화행은 요청 화행 뒤에 발화되며 담화 중간에 위치하지만, 지시 화행은 담화 시작 부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허락 화행이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허락 화행을 준지시 화행으로 설정하여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분석했다.

앞서 살핀 선행 연구들은 모두 허락 화행이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허락 화행을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허락 화행은 지시 화행의 다른 하위 유형인 명령, 요청, 청유, 금지 등의 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락 화행을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허락 화행은 청자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을 없애줌으로써 청자가

---

2) 이준희(2000)에서는 ‘허락’ 대신 ‘허가’의 용어를 채택했으나, ‘허락’과 ‘허가’의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허락’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청자의 행위 수행 여부는 전적으로 청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또한 화행 판별의 기준이 되는 의도성 상태, 갱신 잠재성에서도 허락 화행은 지시 화행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 의도성 상태, 갱신 잠재성과 허락 화행의 실현 양상을 살펴, 허락 화행이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이 아닐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 1.3. 논의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의의, 선행 연구, 본고의 구성에 대해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허락 화행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 논의를 다룰 것이다. 2.1절에서는 화행의 개념을 언어 행위의 구분과 관련하여 살피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행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이며, Leech(1983)을 중심으로 화행의 종류를 살필 것이다. 특히 허락 화행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는 단언 화행의 두 부류를 기술 화행과 주장 화행으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2.2절에서는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의 개념과 해석 과정을 살피고,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이 가지는 정도성을 살필 것이며, 허락 화행이 가지는 직접성과 간접성을 알아볼 것이다. 2.3절에서는 화행 판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Searle(1969)의 본질 조건을 맥락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화행 판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Searle(1983)의 의도성 상태와 Portner(2018)의 갱신 잠재성의 개념을 살필 것이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화행 판별의 기준을 적용하여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을 밝히고,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와 갱신 잠재성을 알아볼 것이다. 3.1절에서는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이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화자의 시도’임을 밝히고, 장애물의 유형이 ‘금지로 인한 장애물’과 ‘무지로 인한 장애물’로 나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3.2절에서는 허락 화행을 위해 화자가 가지는 의도성 상태가 단언의 의도성 상태인 ‘믿음’과 동일함을 밝힐 것이며, 3.3절에서는 허락 화행이 단언과 유사하게 화자와 청자의 공통기반을 갱신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제4장에서는 허락 화행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에 대해 살피겠다. 4.1절에서는 평서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을 살필 것이다. ‘-어도 되다’, ‘-을 수 있다’와 같은 우언적 구성과 ‘허락하다, 허가하다, 가능하다’와 같은 어휘들이 허락 화행에 기여하는 바를 살피고, 각 언어 형식이 표현하는 허락 화행의 직접성과 간접성의 정도를 살필 것이다. 4.2절에서는 허락 화행이 명령문으로 수행될 경우 다양한 맥락 정보가 필요함을 밝히고, ‘-든지/-든가/-거나’와 ‘-되’를 통해 선행절에 허락의 발화수반력이 할당될 수 있음을 살필 것이다. 4.3절에서는 수사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을 살피고,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의 양상이 단언 화행이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양상과 유사함을 밝힐 것이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며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2. 기본적 논의

본 장에서는 허락 화행을 살피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2.1절에서는 화행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살피고, 허락 화행과 관련되는 단언 화행의 두 부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2절에서는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의 개념과 간접 화행을 해석하기 위한 Searle(1975)의 추론 책략을 살핀 후,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이 가지는 정도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한국어의 허락 화행이 가지는 직접성과 간접성을 살필 것이다. 2.3절에서는 허락 화행 정립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Searle(1969)의 본질 조건을 맥락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한 후, 화행 판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Searle(1983)의 화자의 의도성 상태와 Portner(2018)의 갱신 잠재성에 대해 살필 것이다.

### 2.1. 화행의 종류와 허락 화행

#### 2.1.1. 화행의 개념과 종류

화행이라는 개념은 발화를 인간 행위의 일종으로 인식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이때 ‘화행’이라는 용어는 광의의 의미로서 발화와 관련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며, 협의의 의미로서 발화가 담고 있는 화자의 의사소통 목적과 관련되는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행 이론은 Austin(1962)에서 제시한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문장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Austin(1962: 4-6)는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진위문(constatatives)과 구별하여 일상 언어에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는 문장을 수행문(performatives)이라 정의했다. 수행문을 발화하는 것은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Austin(1962: 133-147)는 후반부에 이르러 자

신의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진위문 역시 진술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결국 모든 문장이 수행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1) 가. 집에 가라.

나. 내 동생은 공부를 싫어한다.

(1가)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집에 갈 것을 ‘명령’하는 수행문이다. (1나)는 화자의 동생이 실제로 공부를 싫어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발화로서,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진위문인 동시에,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동생은 공부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수행문이다. 요컨대 모든 발화 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Austin(1962)는 인간의 언어 사용 자체가 ‘행위’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언어 사용 행위를 발화 행위(locutionary act) 층위,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 층위, 발화 효과(perlocutionary effect) 층위로 나누어 살폈다(Austin 1962: 94-108).

Huang(2006: 102)에서는 Austin(1962)에서 제시한 언어 사용 행위의 세 가지 층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발화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 행위 자체로서, 의미 있는 언어 표현을 생성하는 음성(phonetic) 행위이다. 발화수반력이란 화자에 의해 언어 표현이 수행하게 되는 의도적인 힘으로서, 언어 표현과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연관된 관습적 힘에 의해 발생한다. 발화 효과는 언어 표현을 발화하는 것을 통해 야기된 어떠한 결과나 효과를 의미한다.

(2) 가. 너는 그 일을 오늘까지 끝내.

나. 제가 이 펜을 좀 써도 될까요?

(2가)의 발화 행위는 화자가 “너는 그 일을 오늘까지 끝내”라고 소리를 내는 음성 행위이다. 발화수반력은 화자의 발화가 수행하는 힘을 의미하므로, (2가)의 발화수반력은 청자가 그 일을 오늘까지 끝내도록 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다. (2가)의 발

화 효과는 화자가 해당 발화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청자가 오늘까지 그 일을 끝내는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발화 효과는 발화의 결과 청자에게 나타나는 미래의 효과이므로 예측에 한계가 있다. (2나)의 발화를 분석해 보면, 발화 행위는 “제가 이 펜을 좀 써도 될까요?”라는 발화를 소리 내어 말하는 음성 행위이고, 발화수반력은 청자에게 펜을 빌리기 위한 ‘요청’이며, 발화 효과는 청자가 화자에게 펜을 빌려주는 행위 등이 될 것이다.

발화 행위, 발화수반력, 발화 효과 중 화행 연구에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화수반력이다. Huang(2006, 이해운 역 2009: 128)에서는 발화수반력을 “화자가 이행하고자 의도하는 기능의 유형”이며, 발화시에 수행되는 행위로서 관습적으로 규정된 힘이라고 설명했다. 발화수반력은 ‘명령’, ‘요청’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사회적 관습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다. 발화수반력은 화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발화수반력으로는 단언(assertives), 지시(directives), 질문(questions), 언약(commisives) 등이 있다.

발화가 수행하는 언어의 기능은 발화수반력 외에도 다양한 용어로 지칭된다. Huang(2006, 이해운 역 2009: 128)에서는 발화수반력이 발화 포인트(illocutionary point)로 지칭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좁은 의미의 ‘화행’이라는 용어가 발화수반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화행’이라는 용어를 ‘발화수반력’의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며, 특별히 기능의 측면을 강조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화수반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외의 언어 행위의 측면에 관해서는 ‘발화 행위’, ‘발화 효과’와 같이 세분하여 언급할 것이다.

화행의 종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 이유는 모든 유형의 화행이 단일한 층위에서 구분될 수 없으며, 화행의 종류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ustin(1962: 152)에서도 특정 발화가 화행의 종류 중 여러 개에 해당하거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화행의 종류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Searle(1969)의 화행 범주를 따르고 있다. Searle(1969)는 단언(assertives), 선언

(declarations), 언약(commisives), 정표(expressives), 지시(directives)와 같이 다섯 개의 화행으로 범주를 구분하였다. 단언 화행에는 ‘결론짓다(conclude), 기술하다(describe), 진술하다(state)’와 같은 행위를 포함시켰으며, 선언 화행에는 ‘임명하다(appoint), 선언하다(declare)’와 같은 행위를 포함시켰고, 언약 화행에는 ‘보장하다(guarantee), 의도하다(intend), 약속하다(promise)’ 등의 행위를 포함시켰다. 정표 화행에는 ‘사과하다(apologize), 감사하다(thank), 환영하다(welcome)’ 등의 행위를 포함시켰으며, 지시 화행에는 ‘충고하다(advise), 명령하다(command), 요청하다(request)’ 등을 포함시켰다.

Leech(1983)은 화행의 범주로 단언 화행(assertives), 언약 화행(commisives), 정표 화행(expressives), 지시 화행(directives), 질문 화행(roogative)을 제시했다. Leech(1983)의 범주 구분은 Searle(1969)와 거의 유사하지만, 선언 화행 범주를 배제하고 질문 화행 범주를 추가했다는 점이 다르다.

Leech(1983: 179-181)에서는 선언 화행이 다른 화행 범주들과는 다르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발화의 결과들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선언 화행을 화행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명명하다(name)’와 같은 행위는 의사소통적인 행위가 아니라 관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선언 화행은 전형적인 발화수반력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Leech(1983)에서는 통사적 기준보다는 의미, 화용적 기준으로 화행 범주를 구분하려고 했다. Leech(1983: 211)에서는 화행 범주의 구분을 위해 대화 참여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했는데, 질문 화행은 화자의 ‘의심’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단언, 지시, 정표, 언약 화행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 것이다. <표1>은 Leech(1983: 211)에서 제시한 화행의 범주와 대화 참여자의 심리 상태이다.

말화수반력		심리 상태	
범주	예	범주	예
단언 (Assertive)	report, announce	믿음 (Creditive)	believe, assume
지시 (Directive)	urge, command	의무 (Volitional)	wish, willing, intend, determined
언약 (Commissive)	offer, promise		
질문 (Rogative)	ask, inquire	의심 (Dubitative)	wonder, doubt
정표 (Expressive)	excuse, thank	태도 (Attitudinal)	forgive, grateful

<표1> Leech(1983: 211)의 화행 범주와 대화 참여자의 심리 상태

Leech(1983)은 대화 참여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화행 범주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화행 판별의 기준인 의도성 상태의 개념을 고려한 범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형적인 화행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선언 화행을 제거하고, 지시 화행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질문 화행을 지시 화행에서 분리하여 하나의 상위 범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에, 본고는 Leech(1983)의 범주 체계를 따를 것이다.

### 2.1.2. 단언 화행의 두 부류와 허락 화행

앞서 본고는 Leech(1983)의 범주 구분을 따르겠다고 밝히며 화행의 종류로 단언 화행, 지시 화행, 언약 화행, 질문 화행, 정표 화행을 제시했다. 이때 단언 화행에 관해서는 보다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단언 화행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화행인 ‘기술 화행’과 ‘주장 화행’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살필 허락 화행이 장애물의 유형에 따라 ‘기술 화행’과 ‘주장 화행’으로 각기 달리 해석되기 때문이다.

Searle(1969), Leech(1983), Bach & Harnish(1979)는 모두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알리다(announce), 기술하다(describe), 단언하다(affirm), 주장하다(assert), 예측하다(predict)’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Fraser(1975)는 단언 화행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아래에 다양한 단언 화행을 분류했다. Fraser(1975: 191)에서는 단언 화행을 단언 I 유형과 단언 II 유형으로 나눈 후, 단언 I 유형에는 ‘알리다(announce, inform), 보고하다(report), 말하다(say, state, tell)’ 등을 두고, 단언 II 유형에는 ‘인정하다(concede), 단언하다(affirm), 동의하다(agree), 주장하다(claim), 결론짓다(conclude)’ 등을 두었다.

단언 I	add, announce, comment, declare, inform, notify, point out, mention, remark, remind, reply, report, say, state, tell
단언 II	accuse, acknowledge, admit, advocate, affirm, agree, argue, allege, assent, assert, attest, aver, claim, concede, conclude, concur, confess, confirm, disclaim, grant, maintain, object, predict, retract

<표2> Fraser(1975: 191)의 단언 화행의 두 부류

Fraser(1975: 191)에서는 단언 I의 화행들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비교적 적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단언 II의 화행들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특정한 제약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단언 I에 해당하는 ‘알리다(inform)’의 경우에는 발화 이전에 특정한 맥락 조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단언 II에 해당하는 ‘인정하다(concede)’와 같은 경우에는 화행 이전에 화자가 해당 명제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가. 숙제를 다 못 해왔어요.

나. 숙제를 다 못 해온 것을 인정해요.

(3가)는 단언 I 유형에 속하는 화행으로, 화자는 자신이 숙제를 다 못 해왔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리고 있다. (3가)의 선행 맥락은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다. 반면 (3나)는 단언Ⅱ 유형에 속하는 화행으로, 화자는 자신이 숙제를 다 못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Fraser(1975: 191)에 따르면 (3나)의 선행 맥락에는 화자가 자신이 숙제를 다 못 해온 것을 부정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인정하다’는 ‘알리다’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Fraser(1975: 191)에서는 단언Ⅱ에 속하는 ‘고소하다(accuse)’의 경우 해당 명제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함의한다고 설명하며, ‘유지하다(maintain)’의 경우 발화 이전에 이미 해당 명제를 단언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한다.

Fraser(1975)에서 제시한 단언 화행의 구분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하나로 묶인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들의 차이를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언Ⅱ가 반드시 특정 제약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하기가 어렵다. (3나)에서 화자가 발화 이전에 자신이 숙제를 다 못 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더라도 (3나)의 발화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단언Ⅰ과 단언Ⅱ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언Ⅰ과 단언Ⅱ가 가지는 차이가 전제의 유무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단언을 단언Ⅰ과 단언Ⅱ로 구분하는 것일까? 단언Ⅰ과 단언Ⅱ는 ‘정보에 대한 화자의 개입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단언Ⅱ 유형은 정보에 대한 화자의 개입 정도가 단언Ⅰ 유형에 비해 강하다. 즉 단언Ⅱ의 화행들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이 보다 많이 반영된다.

(4)는 단언Ⅰ의 화행 유형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5)는 단언Ⅱ의 화행 유형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4가)의 경우 화자는 자신이 직접 본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4나)의 경우 화자는 자신의 일이 끝났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청자에게 보고한다. 즉 (4)는 화자 자신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반면 (5가)의 화자는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고, (5나)의 화자는 그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근거와 함께 그가 유죄임을 주장하고 있다. Fraser(1975)에서 제시한 단언Ⅰ은 화자가 화자 외부의 정보, 즉 객관적인 사실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단언Ⅱ는 화자가 화자 내부의 정보, 즉 주관적인 생각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 가. 밖에 눈이 오고 있어. (언급 행위)

나. (상사에게) 저는 일을 끝냈습니다. (보고 행위)

(5) 가. 나는 오늘은 일찍 집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해. (동의 행위)

나. 그의 표정을 봤을 때 그는 유죄야. (주장 행위)

본고에서는 단언 화행을 Fraser(1975)의 구분에 따라 세분할 것이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허락 화행이 장애물의 유형에 따라 단언 I로서의 특징과 단언 II로서의 특징을 달리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Fraser(1975)에서 채택한 ‘단언 I’, ‘단언 II’의 용어는 하위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언 I’과 ‘단언 II’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Fraser(1975)에서 제시한 ‘제약의 유무’는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다. ‘단언 II’가 제약을 가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보에 대한 화자의 개입 정도’를 단언 I과 단언 II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 것이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단언 I은 ‘기술 화행’의 부류로 보고, 주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단언 II는 ‘주장 화행’의 부류로 볼 것이다.

## 2.2. 직접/간접 화행의 정도성과 허락 화행

### 2.2.1.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의 정도성

화행은 언어 형식과 화행의 관습적 연결 정도에 따라서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행과 언어 형식의 연결 강도가 강하여 화행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맥락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직접 화행으로 볼 수 있으며, 화행과 언어 형식의 연결 강도가 약하여 화행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맥락 정보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간접 화행이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Searle(1975), Gazdar(1979)에서는 직접 화행을 발화 표면의 형식과 직결되는 화행으로, 간접 화행은 형식과 수행되는 화행이 직결되지 않아 다양한 맥락 요인이 개입하는 화행으로 분석하였다.



평서문으로 실현되는 단언 화행, 명령문으로 실현되는 지시 화행의 경우 별도의 맥락 정보 없이도 화행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화행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지시 화행의 경우 청자는 언어 형식을 통해 해당 발화의 화행을 바로 파악할 수 없다. 다양한 맥락 정보를 토대로 해당 발화의 화행을 추론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간접 화행에 해당된다.

(6) 가. (길을 걸어 가면서) 오늘 참 덥다.

나. (닫혀 있는 창문 바로 옆의 청자를 향해) 오늘 참 덥다.

(7) 가. (백화점에서 문을 잡은 채로 뒤따르는 사람에게) 들어 오시겠어요?

나. (병원에서 다음 환자를 부르며) 들어 오시겠어요?

(6가)와 (6나)의 명시적 언어 표현은 평서문으로 실현된 ‘오늘 참 덥다’로 동일하다. 그러나 (6가)는 길을 걷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발화로 ‘단언’의 발화수반력을 가지지만, (6나)는 창문이 닫혀 있는 방 안에서 창문 바로 옆의 청자에게 말하는 상황이므로 ‘요청’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 이때 평서문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화행으로서, 평서문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언’을 수행하는 평서문 (6가)는 직접 화행이다. 반면 평서문이 요청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는 (6나)의 경우 요청 화행이 간접 화행으로 실현된 것이다.

(7가)와 (7나) 역시 명시적으로 제시된 언어 표현은 의문문 형식의 ‘들어 오시겠어요?’로 동일하다. 그러나 (7가)의 발화는 문을 붙잡은 채로 다음 사람에게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발화수반력을 가지지만, (7나)의 발화는 기다리고 있던 환자에게 들어오라는 지시를 공손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요청’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 의문문이 수행하는 일차적 화행은 질문이므로 (7가)의 경우는 직접 화행으로 분석되며, (7나)의 경우는 간접 화행으로 분석된다.

간접 화행의 해석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Grice(1967)의 ‘협력의 원리’를 적용한 Searle(1975)의 간접 화행 해석이 가장 대표적이다. Searle(1975)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대화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Grice(1967)의 협력의

원리에 따라 화자는 간접 화행을 수행할 수 있고, 청자는 주어진 맥락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발화의 간접 화행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earle(1975: 72-74)에서는 지시 화행을 예로 들어 화자가 간접 화행을 생산하는 방법과 청자가 간접 화행을 해석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표3>은 화자의 간접 지시 화행 생산 방법이며, <표4>는 청자의 간접 지시 화행 해석 과정이다.

일반화 1	화자는 지시 화행의 예비 조건인 ‘어떤 행위를 수행할 청자의 능력’에 대해 질문하거나 진술함으로써 간접 지시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화 2	화자는 지시 화행의 명제 내용 조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진술함으로써 간접 지시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화 3	화자는 지시 화행의 성실성 조건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간접 지시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화 4	화자는 어떤 행위를 수행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거나 진술함으로써 간접 지시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청자의 바람이라면, 화자는 청자에게 그 행위를 하기 원하는지 질문함으로써 간접 지시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표3> Searle(1975: 72)의 간접 지시 화행의 생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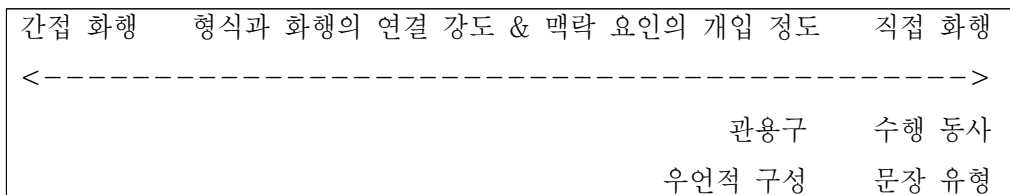
“소금을 줄 수 있니?”에 대한 청자의 해석 단계	
1단계	화자는 나에게 소금을 줄 능력에 대해 물었다.
2단계	나는 화자가 대화에 협력하고 있고, 따라서 그의 발화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다고 추측한다.
3단계	대화의 배경은 나의 소금을 줄 능력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4단계	화자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네’라는 것을 안다.
5단계	그러므로 화자의 발화는 질문이 아닌 다른 발화수반력을 가질 것이다.
6단계	지시 화행의 예비 조건은 ‘청자가 명제 내용 조건 안에서 서술된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7단계	화자는 나에게 소금을 달라는 지시의 예비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함의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답이 나오는 질문을 했다.
8단계	우리는 지금 저녁 식사 중이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에서 소

	금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소금을 이리저리 건네준다.
9단계	화자는 지시 화행의 예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 질문했고, 나는 화자가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10단계	그러므로 다른 발화수반력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화자는 아마도 나에게 소금을 줄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4> Searle(1975: 73-74)의 간접 지시 화행의 해석 과정

Searle(1975)는 이처럼 Searle(1969)에서 제시한 화행의 적정 조건과 Grice(1967)에서 제시한 협력의 원리를 바탕으로 간접 화행이 수행되거나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화자와 청자는 모두 대화에 협력하고 있으므로, 특정 발화의 언어 형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화행이 해당 발화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에 청자는 해당 발화가 어떤 화행의 적정 조건과 관련되는지를 추론하여 해당 발화의 적정한 화행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에는 정도성이 존재한다. 특정 화행과 언어 형식의 연결 강도와 맥락 정보의 개입 정도에 따라 직접 화행에 가까운지 간접 화행에 가까운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수행 동사의 경우 해당 단어가 화행을 곧바로 보여주므로 화행의 직접성이 가장 높으며, 특정 화행과 전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 유형으로 실현되는 화행의 경우에도 직접성이 매우 높다. 우언적 구성이나 관용구를 통해 수행되는 화행은 수행 동사나 문장 유형으로 수행되는 화행만큼 직접성이 높지는 않지만, 관습적으로 빈번하게 특정 화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화행의 직접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 의문문으로 수행되는 지시 화행과 같이, 맥락 정보의 개입 없이는 적절한 화행으로의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행의 간접성이 높다.



<그림1>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의 정도성

## 2.2.2. 허락 화행의 직접성과 간접성

2.2.1절에서 살폈듯이 특정 화행과 강하게 연결된 문장 유형은 청자의 추론 없이 해당 화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화행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언어 형식이다. 그렇다면 허락 화행과 강하게 연결되는 문장 유형, 즉 허락문이 한국어에 존재할까?

노대규(2002)는 종결어미 ‘-으렴, -으려무나’를 허락형 종결어미로 보고 문장 유형의 하나로써 허락문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대규(2002: 829-836)에서는 ‘-으렴, -으려무나’가 다른 명령형 종결어미들과 가지는 통사적 차이를 바탕으로 허락문의 설정 가능성을 검토했다. 노대규(2002: 829-836)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락문과 명령문의 통사적 차이는 ‘청자 대우법 체계상의 차이,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사이에서의 전환의 차이, 서법 어미 형태의 의미상의 차이’이다.<sup>3)</sup> 그러나 노대규(2002)의 논의는 ‘-으렴, -으려무나’를 허락형 종결어미로 상정한 이후 다른 명령형 어미들과의 차이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으렴, -으려무나’를 허락형 종결어미로 볼 수는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으렴, -으려무나’를 ‘부드러운 명령이나 허락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라 기술하며 (8)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종결어미 ‘-으렴’이 쓰인 (8가)의 경우 화자는 청자가 참는 행위를 하기를 바라며, 해당 발화로 인해 청자는 참는 행위를 할 의무를 가지므로 (8가)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종결어미 ‘-으려무나’가 쓰인 (8나)의 경우 맥락에 따라 명령일 수도 있고 허락일 수도 있다. 청자가 음식을 먹고 싶는데 이에 대한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8나)는 허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자가 음식을 먹기를 화자가 바라는 경우에 (8나)는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노대규(2002)에서 제시한 명령형 어미와 ‘-으렴, -으려무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자 대우법 체계상의 차이는 명령형 어미는 합쇼체의 ‘-으십시오’, 하오체의 ‘-으오, -구려’, 하계체의 ‘-아/어라’, 해체의 ‘-아/어’를 가지지만 허락형 어미인 ‘-으렴, -으려무나’는 해라체만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직접, 간접 화법 전환의 차이는 ‘-으렴, -으려무나’는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다른 명령형 종결어미들과 같이 ‘-으라’로 나타나지 않고, ‘-어도 좋다/된다/괜찮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미상의 차이는 ‘-으렴, -으려무나’가 허락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 (8) 가. 네가 좀 참으렴.  
나. 어서 먹으려무나.

이처럼 ‘-으렴, -으려무나’는 허락 화행을 위해 전용되는 것은 아니며, 맥락 요인에 따라 명령 혹은 허락을 위해 모두 쓰일 수 있다. 이는 모든 명령형 종결어미가 상황 맥락에 따라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9)는 교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집에 가지 않고 떠들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집에 가기를 바라는 교사가 하는 발화로, (9)의 발화는 모두 요청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9가)는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어라’를 통해, (9나)는 ‘-으렴’을 통해, (9다)는 ‘-으려무나’를 통해 요청 화행이 실현되고 있다. ‘-으렴, -으려무나’는 ‘-아라/-어라’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차이는 있으나, 수행하는 화행에는 차이가 없다.

- (9) (교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떠들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가. 집에 가라.  
나. 집에 가렴.  
다. 집에 가려무나.

(10)은 숙제를 해오지 않을 경우 남아야 하는 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아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에게 하는 발화로, (10)의 화행은 허락이다. (10가)는 ‘-아라/-어라’를 통해, (10나)는 ‘-으렴’을 통해, (10다)는 ‘-으려무나’를 통해 동일하게 허락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으렴, -으려무나’는 명령형 종결어미와 동일하게 맥락에 따라 명령과 허락을 수행하며, 허락 화행을 위해 전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락형 종결어미로 볼 수 없다.

- (10) (숙제를 해오지 않을 경우 남아야 하는 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 가. 집에 가라.
- 나. 집에 가렴.
- 다. 집에 가려무나.

박재연(2019: 230), 이지수(2016: 86-87)에서도 ‘-으렴, -으려무나’는 명령형 종결어미라고 주장하며 명령문과 형태, 통사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허락문의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1가), (11나)에 쓰인 종결어미 ‘-으렴’, ‘-으려무나’는 과제를 끝내는 행위, 일찍 오는 행위를 명령하는 지시 화행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으렴’, ‘-으려무나’는 별도의 맥락 정보가 없다면 지시 화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11가), (11나)의 문장 유형은 명령문으로 봐야 한다.

- (11) 가. 오늘까지 과제를 끝내렴/끝내려무나.
- 나. 일찍 오렴/오려무나.

이처럼 한국어에는 허락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 화행은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을 통해 실현된다. 한국어에서 허락 화행은 평서문을 통해 실현될 때 가장 직접성이 높다. 특히 [허락]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 우언적 구성 ‘-어도 되다’는 청자의 추론을 가장 적게 필요로 하고, 허락 화행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행의 직접성이 매우 높다.

‘-어도 되다’ 외에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언어 형식들 중 직접성이 높은 것으로는 수행동사가 있다. ‘허락하다, 허가하다’와 같은 수행동사는 [허락]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 맥락의 개입이 적으며, 청자의 추론이 필요하지 않다.

[허락]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어도 되다’와 ‘허락하다, 허가하다’ 이외의 언어 형식을 통한 허락 화행의 경우 화행의 간접성이 높아진다. 허락 화행은 [가능]과 [능력]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우언적 구성 ‘-을 수 있다’, 혹은 어휘 ‘가능하다’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데, [가능], [능력]의 양태 의미는 청자의 행위 수행의 가능성과 연결되면서 특정 맥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청자의 추론을 통해 허락 화행으로

해석된다.

허락 화행은 명령문과 의문문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명령문은 특정한 맥락 요인이 갖추어졌을 때 청자의 추론을 통해 허락 화행으로 해석된다. 허락 화행이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단언 화행과 유사하게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극히 제한된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명령문과 의문문이 허락 화행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평서문의 경우보다 더 많은 맥락 요인의 개입과 청자의 추론이 필요하므로, 명령문과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은 평서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보다 간접성이 높다. 4장에서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이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2.3. 화행 판별의 기준

2.3절에서는 허락 화행의 성립 조건을 분석하고 허락 화행을 판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2.3.1절에서는 허락 화행의 성립 조건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Searle(1969)의 본질 조건을 맥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명할 것이다. 2.3.2절과 2.3.3절에서는 화행 판별의 기준이 되는 Searle(1983)의 의도성 상태와 Portner(2018)의 갱신 잠재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2.3.1. Searle(1969)의 본질 조건

Searle(1969)는 발화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화행을 구성하는 규칙으로 적정 조건(felicity conditions)을 제시했다. Searle(1969)에서 제시한 적정 조건은 명제 내용 조건, 예비 조건, 성실성 조건, 본질 조건과 같은 네 가지 세부 조건을 포함한다.

명제 내용 조건 (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화자가 발화 행위를 통하여 전달하는 내용
예비 조건 (preparatory condition)	화자나 청자가 발화 행위와 관련하여 배경으로 갖는 생각
성실성 조건 (sincerity condition)	화자가 발화 행위에 대해 갖는 심리적 태도
본질 조건 (essential condition)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된 발화 행위의 객관적인 효과

<표5> Searle(1969)의 적정 조건(정희자, 2002: 139에서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

명제 내용 조건은 화행의 재료가 되는 명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관련되는 조건이다. 화행의 재료가 명제임은 김태인(2019)에서 다룬 바 있다. 김태인(2019: 87-88)에서 화행은 문장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면서 명제를 재료로 하여 청자에게 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Searle(1969: 66-67)에서는 명제 내용 조건을 해당 명제에 드러나는 행위가 과거/미래 행위인지, 또는 화자/청자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명제 내용 조건은 해당 화행이 취하는 명제의 특징을 명제에 드러나는 행위의 특징으로 서술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요청 화행의 명제 내용 조건은 청자의 미래 행위가 되며, 단언 화행의 명제 내용 조건은 모든 명제가 된다.

예비 조건은 해당 화행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으로서, 화자와 청자가 전제하고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요청 화행을 위해서는 화자가 요청하고자 하는 미래 행위를 청자가 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언 화행을 위해서는 화자가 단언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해 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특정 화행이 수행되기에 앞서 발화 이전의 맥락에서 갖추어져 있어야 할 전제들이 예비 조건이 된다. 예비 조건은 발화 이전의 맥락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적정 조건들과는 다르게 조건의 수가 하나 이상일 수 있다.

성실성 조건은 화자가 발화 행위에 대해 갖는 심리적 태도로서, 화자가 해당 화행



을 수행하는 동기가 된다. 요청 화행의 성실성 조건은 화자는 청자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며, 단언 화행의 성실성 조건은 화자가 해당 발화에 제시된 명제를 믿는다는 것이다. 청자가 생각하기에 화자가 성실성 조건에 제시된 심리적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청자는 그 발화를 다른 화행으로 해석하게 된다.

(12가)의 교사의 발화는 명령문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므로 청자인 학생은 일차적으로 교사의 발화를 명령 화행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은 곧 교사가 자신이 그냥 집에 가는 행위를 수행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해당 발화가 명령 화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 화행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2나)의 민지의 발화는 일차적으로는 평서문으로 수행되고 있는 단언 화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청자인 은주는 민지가 ‘진수는 집에 갔다’는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단언 화행의 성실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은주는 민지의 발화를 다른 의도가 있는 거짓말로 해석하게 된다.

(12) 가. (청소를 끝내지 않은 학생에게 교사가) 교사: 그냥 집에 가 봐.

나. (은주가 ‘민주가 진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걸 알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민지가 은주에게) 민지: 진수는 집에 갔어.

마지막으로 본질 조건은 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객관적 효과들 중에서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된 효과를 의미하며, 해당 화행이 청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보여주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요청 화행의 본질 조건은 ‘청자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수행하게 하려는 화자의 시도로 간주된다’는 것이며, 단언 화행의 본질 조건은 ‘제시된 명제가 사건의 실제 상태를 표상한다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약속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Searle(1969: 57-71)에서는 약속(promise), 요청(request), 단언(assert), 질문(question), 감사(thank), 충고(advise), 경고(warn), 환영(greet), 축하(congratulate) 화행의 적정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6>은 Searle(1969: 57-71)에서 제시한 화행들 중에서 요청, 단언, 약속 화행의 적정 조건이다.

	요청	단언	약속
명제 내용 조건	청자의 미래 행위	모든 명제	화자의 미래 행위
예비 조건	청자는 행위 수행의 능력이 있으며, 화자는 청자가 행위 수행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사건의 일반적 과정에서 청자가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는 화자와 청자에게 분명하지 않다.	화자는 명제 p가 참이라는 증거를 가진다. 청자가 p를 알고 있는지 화자와 청자에게 분명하지 않다.	청자는 화자가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며, 화자는 ‘청자가 화자가 미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믿는다. 사건의 일반적 과정에서 화자가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는 화자와 청자에게 분명하지 않다.
성실성 조건	화자는 청자가 행위를 수행하기를 원한다.	화자는 p를 믿는다.	화자는 미래 행위를 수행하기를 의도한다.
본질 조건	청자로 하여금 행위를 수행하게 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p가 사건의 실제 상태를 표상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으로 간주된다.	화자가 미래 행위를 해야 하는 책임으로 간주된다.

<표6> Searle(1969: 57-71)의 요청, 단언, 약속 화행의 적정 조건

Searle(1969)에서 제시한 적정 조건은 모두 화행 분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화행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본질 조건이다. 본질 조건은 특정 화행이 청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청자가 특정 화행을 해석할 때 인식하는 화자의 발화 목적이다. 지금까지 지시 화행이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되는 발화로 규정되어 온 것도 요청 화행의 본질 조건이 ‘청자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수행하게 하려는 화자의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질 조건

은 화자의 발화 목적을 청자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는지와 관련된 조건으로, 의사소통이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임을 고려했을 때, 화행의 본질을 보여주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질 조건을 화행의 적정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행 성립의 조건으로 보고,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을 밝힐 것이다.

그런데 Searle(1969)에서 제시한 본질 조건에 대한 설명은 발화 이후의 다양한 발화 효과 행위 중 어떤 결과가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된 것인지, 어떤 결과가 가장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Searle(1969: 51)에서는 언약 화행의 본질 조건을 ‘화자가 자신이 제시한 미래 행위를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언약 화행 이후의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청자의 기대’는 왜 언약 화행의 본질 조건이 아닌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13) (어머니께서 어질러진 민주의 방을 보며 한숨을 쉬자) 민주: 지금 치울게요.

(13)의 언약 화행의 발화 효과 행위는 민주가 방을 치울 것이라는 ‘어머니의 기대’와 방을 치워야 하는 ‘민주의 의무’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Searle(1969)에서 제시한 언약 화행의 본질 조건으로는 ‘민주의 의무’만이 해당된다. 이때 ‘맥락의 변화’를 고려하면 ‘청자의 기대’가 왜 ‘발화 행위의 객관적인 효과’로서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되는 언약 화행의 본질 조건이 될 수 없는지 설명할 수 있다. 발화 이전의 맥락에서는 민주가 자신의 방을 치울 의무를 지니지 않았으나, 민주의 발화로 인해 발화 이후의 맥락에는 민주의 의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대’는 발화 이전에도 존재하던 것이다. 민주의 발화 이전에도 어머니는 민주가 방을 치우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기대를 바탕으로 민주는 언약 화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맥락의 변화를 고려하면 본질 조건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발화 이전의 맥락에서 발화 이후의 맥락으로 옮겨갈 때 변화하는 맥락 요인과 관련된 발화의 효과를 발화 목적과 관련된 객관적인 효과로 분석할 것이다.

### 2.3.2. Searle(1983)의 의도성 상태

화자의 의도성 상태는 위에서 살핀 Searle(1969)에서 제시한 성실성 조건과 관련된다. 성실성 조건은 화자가 발화 행위를 위해 가지는 심리적 태도를 의미하는데, Searle(1983)에서는 성실성 조건에 제시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의도성 상태(intentional states)라는 개념으로 보다 세밀히 살폈다. 의도성 상태는 Searle(1983), Kissine(2013)에서 화행 범주 구분의 기준으로 적용되었는데, 본고에서도 의도성 상태를 허락 화행의 판별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다.

Searle(1983: 1-4)에서는 ‘의도성’을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방향성(directness)’, 혹은 ‘대하여성(aboutness)’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며, ‘방향성’과 ‘대하여성’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다양한 의미로 논의되며 혼란을 가중시켰기에 ‘의도성’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겠다고 설명한다. 이때 의도성은 화자가 세계의 사실들과 관련하여 가지는 심리적 상태가 가지는 지향성 혹은 지양성을 의미한다.

(14가)에서는 화자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칭자가 잘 해낼 것이라는 세계의 사건’에 대한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14나)에서는 ‘칭자가 오늘까지 과제를 끝내는 세계의 사건’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소망 역시 특정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는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Searle(1983)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의도성이라 정의한 것이다.

(14) 가. 나는 네가 잘 해내리라 믿어.

나. 과제를 오늘까지 끝내.

그런데 이때 모든 심리적 상태가 의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없는 긴장, 불안과 같은 심리적 상태는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다. Searle(1983: 180-181)에서는 ‘무엇에 대한 심리적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의도성을 가지는 심리적 상태와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심리적 상태를 구분했다. ‘무엇에 대한 심리적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만이 의도성을 가지며,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의도성 상태(intentional states)라고 한다.

Searle(1983: 4)에 따르면 의도성 상태에는 ‘사랑하다(love), 싫어하다(hate), 믿다(believe), 소망하다(desire)’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도성 상태가 화행 범주의 구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Searle(1983: 4-12)에서는 화행과 의도성 상태가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표상한다고 설명한다. 화행이 화자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명제 내용에 대해 발화수반력을 표상하는 것이라면, 의도성 상태 역시 화자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명제 내용에 대해 심리적 상태를 표상한다.

Searle(1983)은 단언과 지시 화행의 ‘의도성 상태’와 ‘말과 세계의 부합 방향(direction-of-fit)’을 살폈다. 단언 화행은 화자가 세계의 사건에 대해 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세계에 맞추는 화행이다. 이러한 단언의 부합 방향을 ‘words-to-world’라 한다. 지시 화행은 화자가 청자의 특정 행위가 발생하기를 ‘소망’하며 세계를 말에 맞추는 화행이다. 지시 화행의 부합 방향을 ‘world-to-words’라 한다.

화행	의도성 상태	말과 세계의 부합 방향(direction-of-fit)
단언	믿음	words-to-world
지시	소망	world-to-words

<표7> Searle(1983)의 단언과 지시의 의도성 상태와 부합 방향

(15가)의 화행은 ‘나는 2월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단언 화행이며, (15나)의 화행은 ‘지금 당장 방을 치우는 행위’를 청자에게 명령하는 지시 화행이다. 이때 (15가)의 화자는 ‘내가 2월에 여행을 가는 사건’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화자는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실세계의 사건에 맞추어 말을 하는 것이므로 ‘words-to-world’의 방향을 가진다. (15나)의 화자는 ‘청자가 지금 당장 방을 치우는 행위’를 수행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청자가 지금 당장 방을 치우는 사건은 화자의 말로 인해 발생하게 되므로 ‘world-to-words’의 방향을 가진다. 이처럼 단언과 지시 화행은 말과 세계의 부합 방향과 화자의 의도성 상태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5) 가. 나는 2월에 여행을 가.

나. 지금 당장 방을 치워.

Searle(1983)은 이처럼 화행의 의도성 상태와 함께 말과 세계의 부합 방향을 살폈으나, Kissine(2013: 44)에서는 의도성 상태의 잠재성과 비잠재성을 살폈다. 지시 화행의 의도성 상태인 ‘소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소망하는 사건이 실세계에서 참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즉 화자가 소망하는 사건, 지시한 사건은 참이 될 잠재성을 가지는 것이다. 반면 단언 화행의 경우 화자는 명제 내용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화한다. 명제 내용이 실세계에서 실제로 참인지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화자는 그 명제 내용이 이미 참이라고 믿고 발화하기 때문에 ‘믿음’의 의도성 상태는 잠재성을 가지지 않는다.

화행	의도성 상태	잠재성
단언	믿음	비잠재적
지시	소망	잠재적

<표8> Kissine(2013)의 단언과 지시의 의도성 상태와 잠재성

Kissine(2013)에서 세계와 말의 부합 방향 대신 잠재성을 살핀 이유는 단언 화행에서 화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사건이 실제로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와 말의 부합 방향만을 고려한다면 화자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화자의 말이 세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화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사건이 실제로는 거짓이라면 믿음의 의도성 상태를 가지는 단언의 명제 내용이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잠재성을 고려하면, 화자가 참이라 믿는 명제 내용은 발화 당시 이미 참으로 결정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비잠재성을 가지므로 화자가 믿는 명제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Searle(1983)은 의도성 상태의 세계와 말의 부합 방향을 고려했고, Kissine(2013)은 의도성 상태의 잠재성과 비잠재성을 고려했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단언 화행과 지시 화행의 의도성 상태를 동일하게 분석했다. 단언은 화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며 지시는 화자의 ‘소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 2.3.3. Portner(2018)의 갱신 잠재성

Portner(2018)은 발화로 인해 변화하는 맥락의 유형을 기준으로 화행 범주를 구분했다. Portner(2018)은 발화 전의 맥락에서 발화 후의 맥락으로의 변화를 ‘갱신 잠재성(update potential)’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갱신 잠재성’이란 ‘발화가 맥락을 갱신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up>4)</sup> 이때 발화가 갱신하는 맥락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명제들의 집합인 공통기반(common ground)이며, 두 번째 유형은 질문 집합(question set)이고, 세 번째 유형은 각각의 대화 참여자들이 가지는 해야 할 행위 목록(to-do list)이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은 각각 단언, 질문, 요청의 발화수반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단언, 질문, 요청 화행은 서로 다른 맥락 유형을 갱신한다. 먼저 단언 화행은 화자와 청자의 공통기반을 갱신하며, 질문 화행은 질문 집합을 갱신하고, 요청 화행은 청자가 수행해야 할 행위 목록을 갱신한다.

문장 유형	발화수반력	맥락 요소
평서문	단언	공통기반 갱신
의문문	질문	질문 집합 갱신
명령문	요청	청자의 해야 할 행위 목록 갱신

<표9> Portner(2018: 181)의 구조화된 담화 맥락

요청 화행과 단언 화행의 갱신 잠재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16)은 요청 화행을 수행하는 명령문이다. 이때 (16)의 문장은 청자가 수행해야 할 행위 목

4) 갱신 잠재성의 개념은 Gazdar(1979)의 논의에서부터 언급되었으나, 본고는 Portner(2018)에서 정리하고 적용한 개념을 따른다.

록에 ‘남기지 말고 다 먹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맥락을 갱신한다. (16)의 발화 이전에 청자의 행위 목록에 ‘남기지 말고 다 먹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자는 해당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지니지 않았으나, (16)의 발화로 인해 청자는 행위 목록에 추가된 해당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16)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17)은 단언 화행을 수행하는 평서문인데, 화자와 청자의 공통기반에 ‘그가 이미 집에 갔다’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맥락을 갱신하고 있다. 공통기반은 화자가 믿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을 의미한다. 화자의 발화 이전에 ‘그는 이미 집에 갔다’라는 명제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인데, 화자는 청자가 해당 명제를 모르고 있다고 믿는다. 화자는 (17)과 같이 발화함으로써 청자의 배경지식에 해당 명제를 추가하게 되고, 발화 이후 화자는 청자와의 공통기반에 해당 명제가 추가되었다고 믿는다.

(17) 그는 이미 집에 갔다.

이처럼 Portner(2018)에서는 발화의 기능을 포착하기 위해 발화가 갱신하는 맥락의 유형을 나누어 살폈다. 맥락의 유형을 공통기반, 청자의 해야 할 행위 목록, 질문 집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은 세부적인 화행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맥락 유형을 단순화한 만큼 특정 발화가 단언에 속하는지 지시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데에는 도움을 준다. 따라서 Portner(2018)의 갱신 잠재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허락 화행이 갱신하는 맥락 유형을 살핌으로써 허락이 단언 화행에 속하는지 지시 화행에 속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 3. 허락 화행의 정립

#### 3.1.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

2.3.1절에서는 Searle(1969)에서 제시한 본질 조건의 개념을 살피고, 화행의 본질 조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맥락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본질 조건은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된 발화 행위의 객관적인 효과’를 의미하는데, 화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효과들 중에서 발화 목적과 관련된 효과는 발화 이전의 맥락에서 발화 이후의 맥락으로 옮겨갈 때 변화한 요인과 관련된 것임을 살폈다. 변화한 맥락 요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다양한 발화 효과들 중에서 어떤 효과가 본질적인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은 무엇일까?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락 발화 이전의 맥락 요인들과 허락 발화 이후의 맥락 요인들을 비교한 후 변화한 맥락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본고에서는 허락 발화의 이전과 이후 맥락을 세밀히 비교하기 위해서 발화의 이전과 이후를 순차적으로 살핀 Panther & Thornburg(1998)의 화행 시나리오를 적용하고자 한다.

Panther & Thornburg(1998: 758)은 사람들이 담화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미 꽤 구체적인 화행의 개념을 활성화한다고 가정하고 인지 구조 속에 행위 시나리오(action scenario)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때 행위 시나리오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요소는 발화 이전의 맥락을 구성하는 선행 요소(BEFORE component)이며 두 번째 요소는 해당 행위의 필수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핵심 요소(CORE component)이다. 세 번째 요소는 만약 그 행위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면 얻게 되는 즉각적인 결과 요소(RESULT component)이며 마지막 요소는 그 행위의 의도된 결과를 묘사하는 후행 요소(AFTER component)이다. Panther & Thornburg(1998)에서는 다양한 화행들이 각각의 화행 시나리오를 가진다고 설명하

며 화행 시나리오의 예로 요청 화행의 시나리오를 보였다.

선행 요소 (The BEFORE)	청자는 행위 A를 할 수 있다. 화자는 청자가 행위 A를 하기를 바란다.
핵심 요소 (The CORE)	화자는 청자를 행위 A를 해야 할 의무 아래 놓는다.
결과 요소 (The RESULT)	청자는 행위 A를 해야 할 의무 아래에 있다.
후행 요소 (The AFTER)	청자는 행위 A를 할 것이다.

<표1> Panther & Thornburg(1998: 759)의 요청 화행 시나리오

Panther & Thornburg(1998)에서 제시한 화행 시나리오의 선행 요소는 발화 이전의 맥락 요인이며, 결과 요소와 후행 요소는 발화 이후의 맥락 요인이다. 그런데 Panther & Thornburg(1998)은 똑같이 발화 이후의 맥락을 구성하는 결과 요소와 후행 요소를 왜 구분하였을까? 결과 요소를 발화의 ‘즉각적인 결과’로 보고 후행 요소의 다른 결과들과 구분한 이유는 발화 이후의 맥락 요인들 중에서 화행의 본질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나의 요인이 존재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Panther & Thornburg(1998: 759)에서는 화행 시나리오의 각 요소들이 전체로서의 화행 시나리오와 서로 다른 강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 핵심 요소가 화행 시나리오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핵심 요소에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즉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로 갈수록 전체로서의 화행 시나리오와의 연결 강도는 약해진다. 이는 결과 요소를 후행 요소보다 화행의 본질과 더 가까운 결과 요인으로 분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Panther & Thornburg(1998) 역시 Searle(1969)와 마찬가지로 발화 이후의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어떤 결과가 결과 요소가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즉각성’이라는 직관에 의존하여 결과 요소와 후행 요소를 구분하였으나, 실제로 무엇이 먼저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Panther &

Thornburg(1998)의 화행 시나리오 중에서 선행 요소를 발화 이전의 맥락으로 보고, 결과 요소와 후행 요소를 발화 이후의 맥락으로 묶어서 살핀 이후에, 발화 이전 맥락에서 발화 이후의 맥락으로 옮겨갈 때 변화한 맥락 요인을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동혁(2016: 33-34)에서는 허락 화행의 시나리오를 <표2>와 같이 제시했다. 이동혁(2016)의 허락 화행 시나리오는 선행 요소를 세밀히 살폈으나, 허락의 발화 이후 맥락을 이루는 결과 요소와 후행 요소를 자세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결과 요소를 ‘허가를 받다’로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후행 요소로 제시한 ‘청자는 행위 A를 할 것이다’라는 요소는 허락 발화의 결과로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행 요소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행 요소	① 청자는 어떤 행동 A를 하기를 원한다.
	② A를 한 뒤의 결과 상황을 청자는 모르며, 화자는 안다.
	③ 청자는 A를 직접 할 수 없다.
	④ 화자는 청자가 A를 하게 할 수 있다.
핵심 요소	화자는 청자에게 A를 하도록 허가한다.
결과 요소	청자는 화자에게서 허가를 받다.
후행 요소	청자는 A를 할 것이다.

<표2> 이동혁(2016: 33-34)의 허락 화행 시나리오

본고에서는 이동혁(2016)에서 제시한 허락 화행 시나리오를 보완하여, 허락 화행의 발화 이전 맥락과 이후의 맥락에서 ‘청자의 소망, 화자의 권한, 장애물’의 세 가지 맥락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동혁(2016)에서 제시한 선행 요소 ①은 ‘청자의 소망’ 요인이다. 선행 요소 ②와 ③은 ‘장애물’ 요인으로 살필 것이다. ②는 청자의 무지로 인해 청자의 행위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며, ③은 청자의 무지 혹은 다른 외부적 제약으로 인해 청자의 행위 수행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므로 ‘장애물’ 요인으로 묶어서 살필 수 있다. 선행 요소 ④는 ‘화자의 권한’ 요인으로 살필 것이다.

실제 허락의 장면을 살펴봄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맥락 요인이 발화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청자의 소망’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1가)는 허락 화행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우연적 구성 ‘-어도 되다’가 사용된 허락 발화이고, (1나)는 [가능]과 [능력]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을 수 있다’가 허락 화행에 사용된 예이며, (1다)는 명령문이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된 예이다.

(1) 가. 동생: (자신의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여기는 파스타 양이 좀 적다.

언니: 내 파스타 더 먹어도 돼.

나. 손님: (두리번거리면서) 담배를 좀 피우고 싶은데요.

식당 주인: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실 수 있습니다.

다. 학생: 배고픈데 언제 집에 가도 돼요?

교사: 이제 집에 가.

(1가)에서 언니의 허락 발화 이전에 동생은 파스타의 양이 적다고 말하고 있다. 언니는 동생의 말을 들은 후 동생이 파스타를 더 먹고 싶어 한다고 믿게 된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언니는 동생에게 자신의 파스타를 먹는 것을 허락하며, 자신의 허락 발화 이후에도 여전히 동생이 파스타를 더 먹기를 소망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생이 배가 불러 더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파스타를 먹는 행위를 소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동생의 소망에 대한 언니의 믿음이 수정되겠지만, 동생의 특정 발화가 있기 전까지 언니는 동생이 파스타를 더 먹고 싶어 한다고 믿는다.

(1나)에서도 식당 주인은 자신의 허락 발화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를 소망한다는 손님의 말을 듣고 ‘손님이 담배 피우기를 소망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테라스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허락하게 된다. 식당 주인은 자신의 허락 발화 이후에도 손님이 여전히 흡연 행위를 소망할 것이라 생각하며, 따라서 그 행위를 수행할 것이라 믿게 된다.

(1다)에서는 학생의 질문을 통해 교사는 학생이 집에 가기를 소망한다고 믿게 된다. 이후 교사는 학생에게 귀가 행위를 허락하고 있으며, 자신의 허락 이후에도 학생이 귀가하기를 소망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청자의 소망에 대한 화자의 믿음

은 화자의 허락 발화 이전 맥락에서 허락 발화를 위한 동기로 작용하며, 허락 발화 이후에도 유지된다.

두 번째로 화자의 권한 요인을 살펴보자. (2)는 모두 ‘-어도 되다’가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된 예시이다. 먼저 (2가)에서 수지는 자신이 소유한 우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우산을 쓰는 행위에 대해 자신이 헤린보다 더 높은 의무론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수지의 허락 발화 이후에도 우산은 여전히 수지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수지의 믿음은 유지된다. 허락 발화 이후에 수지는 “근데 내가 아끼는 우산이니까 꼭 돌려줘야 해”라고 말하며 허락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수지의 권한이 헤린의 권한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 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헤린에게) 수지: 내 우산 써도 돼.

나. 의사: 감기약하고 같이 드셔도 됩니다.

다. 교사: (쉬는 시간 종이 찢으나 수업을 이어가던 중에) 이제 나가도 돼.

(2나)에서는 허락 발화의 화자인 의사가 환자보다 복약 지침에 대해 더 높은 인식론적 권한을 가진다. 환자는 처방 받은 약을 감기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의사는 알고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 결과 환자는 의사의 발화 이전에는 수행할 수 없었던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허락 발화 이후에도 의사는 “근데 식사 후에 드실 때만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허락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보다 높은 권한을 가진다.

(2다)에서는 교육 현장이라는 제한된 상황 맥락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제한할 사회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이 끝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교실 내의 규칙도 존재한다.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 허락 발화 이후에도 교사의 권한은 유지된다. 의무론적 권한, 인식론적 권한은 유동적인 데에 비해 사회적 권한은 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허락 발화 이후에도 사회적 권한은 유지된다. 의무론적 권한, 인식론적 권한, 사회적 권한의 차이는 있지만, 허락의 발화 이전과 이후 맥락에서 모두 화

자의 권한이 청자의 권한보다 높거나, 적어도 더 낮지는 않다는 것은 동일하다.

(3) 가. 동생: 내 컴퓨터 고장났어.

언니: 내 컴퓨터 써도 돼.

나. 손님: 담배를 좀 피우고 싶은데요.

식당 주인: 테라스에서 담배 피우실 수 있습니다.

다. 학생: 청소 다 했어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교사: 집에 가라.

마지막으로 장애물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 (3가)에서 언니는 허락 발화 이전에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 동생이 장애물을 가진다고 믿는다. 언니는 자신의 컴퓨터에 대해 동생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동생이 언니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이라 믿는 것이다. 그러나 허락 발화 이후에 언니는 자신이 동생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을 제거해주었으므로 동생이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언니는 허락의 발화를 통해 동생에게 존재하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해주었다고 믿는 것이다.

(3나)에서 식당 주인은 손님이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정보를 통해 손님에게 흡연 행위의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론해낸다. 이때 손님은 어디에서 흡연이 가능한지를 모른다는 장애물이 존재하여 흡연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식당 주인은 손님에게 이러한 장애물이 존재함을 알고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허락하게 되며, 허락 발화 이후에는 자신의 발화로 인해 손님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이 사라지고 손님이 흡연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

(3다)에서 교사의 허락 이전에 학생은 언제 집에 가도 되냐고 묻고 있다. 교사는 학생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귀가 행위를 결정,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하게 된다. 물론 교육 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 맥락이기 때문에 학생의 질문 없이도 교사는 학생이 교사의 허락 없이는 귀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의 지위 관계가 학생의 귀가 행위의 장애물이 됨을 알고 있다. 교사는 허락 발화를 통해 학생이 귀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써 학생에게 존

재하던 장애물은 사라지게 된다.

허락 발화 이전의 맥락	허락 발화 이후의 맥락
[청자의 소망] 화자는 청자가 행위 A를 수행하기를 소망한다고 믿는다.	[청자의 소망] 화자는 청자가 행위 A를 수행하기를 소망한다고 믿는다.
[화자의 권한] 화자는 자신이 행위 A에 대해 청자보다 높은 권한을 가진다고 믿는다.	[화자의 권한] 화자는 자신이 행위 A에 대해 청자보다 낮지 않은 권한을 가진다고 믿는다.
[장애물] 화자는 청자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믿는다.	[장애물] 화자는 청자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이 자신의 발화로 인해 사라졌다고 믿는다.

<표3> 허락 발화 이전과 이후의 맥락 요인

지금까지 허락 발화 이전 맥락과 이후 맥락에서 ‘청자의 소망, 화자의 권한, 장애물’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폈다. 허락 발화 이전에 화자는 청자가 해당 행위를 소망한다고 믿으며, 화자 자신이 해당 행위에 대해 청자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다고 믿고, 청자에게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허락 발화 이후에 화자는 허락 전과 동일하게 청자가 해당 행위를 소망한다고 믿고 화자 자신이 해당 행위에 대해 청자보다 더 높은 권한, 적어도 낮지 않은 권한을 가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허락 전과는 다르게 청자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은 없어졌다고 믿는다. 즉 허락 발화로 인해 변화하는 맥락 요인은 장애물 요인이기 때문에 허락의 본질 조건은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과 관련된다.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은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화자의 시도’이다.<sup>5)</sup> 화자는 청자 행위 수행의 장애물이 허락의 발화 이전에는 존재했으나, 이후

5) Davies(1986)에서도 허락을 ‘행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로 본 바가 있다. 그러나 Davies(1986)은 지시 화행의 성립 조건을 수정함으로써 허락을 지시의 범주 안에 위치시켰

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애물 요인이 허락 발화에서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되며, 허락 화행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인지 검증해보자. 화행의 본질 조건은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된 결과로서, 해당 발화가 어떻게 간주되는지를 규정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발화 이전의 맥락에서 이후의 맥락으로 옮겨갈 때 변화한 요인이어서는 안 되며 해당 화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맥락 요인이라는 점이 검증되어야 한다.

허락의 발화 이전에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4가)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빵을 먹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는데,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에게 빵을 먹는 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면 이러한 발화는 부적절한 발화가 된다. 즉 (4가)의 발화 이전에 이미 청자가 자유롭게 빵을 먹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면 (4가)의 발화는 불필요한 발화가 되는 것이다. (4나)에서 화자는 청자가 숙제를 다 한 경우에 한정하여 노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청자가 이미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상황이라면 (4나)의 허락은 불필요한 발화가 된다. 이처럼 청자 행위 수행의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믿음은 허락 화행의 동기로 작용하며, 청자 행위 수행의 장애물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허락 화행이 수행되기 어렵다.

(4) 가. 이 빵 너 먹어도 돼.

나. 숙제 다 했으면 놀아도 된다.

이처럼 청자 행위 수행의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믿음은 허락 화행의 동기로 작용하며, 허락 발화 이전에 꼭 전제되어야 하는 맥락 요인이고, 발화 이전 맥락에서 이후 맥락으로 이동할 때 변화하는 맥락 요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은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화자의 시도’이다.

그런데 이때 청자 행위 수행의 장애물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장애물은 청자에게 행위 A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청자가 행위 A를 수

---

다.



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의 장애물은 청자가 행위 A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상황이다. 두 번째 유형은 <표2>에서 살핀 이동혁(2016: 33-34)의 허락 화행 시나리오에서 ‘A를 한 뒤의 결과 상황을 청자는 모른다’라는 구성 요소로 제시된 바 있다.

각 유형의 장애물은 서로 다른 유형의 권한과 연결되며, 그 결과 각 유형에 따라 허락 화행이 보이는 양상도 다르다. 유형①의 ‘금지로 인한 장애물’은 의무론적 권한과 연결되며, 이 경우의 허락 화행은 2.1.2절에서 살핀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 중 ‘주장 화행’과 가깝다. 반면 유형②의 ‘무지로 인한 장애물’은 인식론적 권한과 연결되며, 이때의 허락 화행은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 중 ‘기술 화행’과 가깝다. 3.1.1절과 3.1.2절에서는 장애물의 유형에 따른 허락 화행의 양상을 살필 것이다.

[장애물의 존재] 화자는 청자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믿는다.	
① 금지로 인한 장애물 청자는 행위 A를 선택할 수 없다.	② 무지로 인한 장애물 청자는 행위 A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표4> 허락 화행에서 청자가 갖는 장애물의 유형

### 3.1.1. 금지로 인한 장애물

허락의 발화 이전에 청자가 행위 A에 대해 ‘금지로 인한 장애물’을 가진다면, 청자는 행위 A를 선택할 수 없다. 화자는 청자에게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믿을 때, 해당 장애물을 제거해줌으로써 행위 A를 허락한다. ‘금지로 인한 장애물’을 화자가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화자가 청자보다 더 높은 의무론적 권한을 가질 때이다.

(5) 가. 직장 동료 A(흡연자): 아 오늘따라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네.

직장 동료 B(비흡연자): 아 그래요? 피우셔도 돼요.

나. 교사: (쉬는 시간 종이 치기 전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화장실 다녀와도 돼.

(5가)는 청자에게 흡연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5가)의 A와 B는 직장 동료 사이로, 평소 B는 비흡연자이고,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이며, 이 사실은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이다. 이 경우 B의 발화 이전에는 청자에게 흡연이 금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A의 흡연을 금지하는 장애물은 B의 심리적 요소이다. B는 자신의 심리적 요소에 관해 A보다 높은 의무론적 권한을 가진다. 그 결과 A에게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줄 수 있으며, 흡연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5나)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교사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는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규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며, 교사는 학생보다 더 높은 의무론적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교사는 규칙으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수업이 끝난 상황에서 학생에게 화장실에 다녀오는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금지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허락 화행의 경우 단언 화행의 두 부류 중 주장 화행과 더 가깝다. 2.1.2절에서는 단언 화행을 ‘정보에 대한 화자의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 화행과 주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주장 화행으로 나누어 살폈었다.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장애물을 없애야겠다고 결정하는 주체는 화자가 된다. 화자는 청자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주관적인 정보로서 전달하는 것이다.

(6) (피곤해하는 준수에게) 교사: 일찍 집에 가서 쉬어도 돼.

(7) 준수는 오늘 일찍 집에 가서 쉬어야 해.

(8) 준수는 오늘 일찍 집에 가서 쉬고 있어.

(9) 오늘은 제발 집에 일찍 들어와서 쉬어라.

(6)은 교사가 준수에게 일찍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는 발화이다. (7)은 화자가 ‘준수는 오늘 일찍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는 명제를 주장하는 발화이며, (8)은 화

자가 청자에게 ‘준수는 오늘 일찍 집에 가서 쉬고 있다’는 명제를 기술하는 발화이다. (9)는 집에 일찍 들어와 쉬는 것을 요청하는 발화이다. 허락 화행을 수행하고 있는 (6)은 화자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9)의 요청 화행과 다르며, (6)에서 허락의 대상이 되는 명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8)의 기술 화행과도 다르다. ‘일찍 집에 가서 쉬어도 된다’는 명제는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청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7)의 주장 화행과 유사하다.

### 3.1.2. 무지로 인한 장애물

허락은 청자에게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허락 발화의 청자가 특정 행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청자는 이러한 무지로 인해 행위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제약을 가지게 된다. 이때 청자의 행위 수행에 대한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화자가 알고 있다면, 화자는 청자보다 더 높은 인식론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허락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10) 가. 식당 손님: 여기 담배 피워도 되나요?

식당 직원: 네, 테라스에서는 피우셔도 돼요.

나. (비행기에서) 승객: 지금 일어서도 되나요?

승무원: 안전벨트 등이 꺼져 있을 때는 일어나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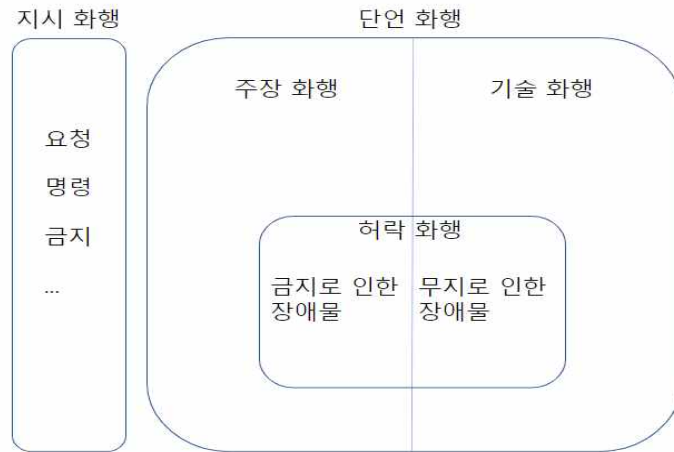
(10가)의 손님은 해당 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흡연 행위에 장애물을 가지고 있으며, (10나)의 승객은 비행기에서 지금 일어나도 되는지를 몰라서 일어서는 행위에 대해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즉 (10)의 허락 발화의 청자는 모두 무지로 인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이때 허락 발화의 화자인 (10가)의 직원과 (10나)의 승무원은 청자인 손님, 승객보다 해당 행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더 높은 인식론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10가)의 직원과 (10나)의 승무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청자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청자가 해당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 중에 기술 화행과 유사하다. 주장 화행은 화자의 결정, 생각 등의 주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 기술 화행은 화자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화행이다. 청자에게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화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자의 행위 수행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 (11) 직원: 이곳의 음료는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 (12)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게 좋아.
- (13) 음료를 많이 마셨어.
- (14) 음료를 많이 마셔.

(11)은 직원이 손님에게 식당의 음료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손님이 식당의 음료를 제약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 허락 발화 이전의 손님은 이곳의 음료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몰라서 음료를 마시는 행위에 대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직원의 허락 발화로 인해 음료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는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주장 화행이고, (13)은 음료를 많이 마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기술 화행이다. (14)는 음료를 많이 마시라는 지시 화행이다. 이때 (11)의 허락 화행은 직원이 자신의 생각 혹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13)의 기술 화행과 유사하다.



<그림2> 장애물 유형에 따른 허락 화행의 범주적 위치

### 3.2.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

2.3.2절에서는 화자의 의도성 상태의 개념과 단언 화행, 지시 화행의 의도성 상태를 살폈다. 화자의 의도성 상태는 명제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포함하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의미하며, 단언 화행의 화자의 의도성 상태는 믿음이고, 지시 화행의 화자의 의도성 상태는 소망임을 제시했다.

허락 화행은 이지수(2016), 김강희(2018) 등의 연구에서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지시 화행과는 다르게 화자의 소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지적되어 왔다. 즉 허락 화행의 화자의 의도성 상태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다. 허락 화행의 화자의 의도성 상태를 지시 화행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요청 화행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15) 가. 동생: (울면서) 나도 가지고 놀고 싶어.

언니: 싫어. 내가 먼저 놀고 있었잖아.

엄마: 동생 울잖니. 동생에게 그 장난감을 빌려줘.

나. 언니: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요?

엄마: 동생이 오기 전까지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돼.

(15가)에서 엄마의 발화는 요청 화행을 수행하고, (15나)에서 엄마의 발화는 허락 화행을 수행한다. (15가)에서 엄마는 청자인 언니에게 동생이 울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동생에게 장난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요청 화행은 화자인 엄마의 소망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반면 (15나)에서 엄마는 청자인 언니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때 허락 화행의 동기가 되는 것은 청자인 언니의 소망이다. 즉 엄마는 언니의 앞선 질문을 통해 언니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알고 해당 행위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인 엄마의 소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허락 화행의 화자의 의도성 상태는 소망이 아니다. 그렇다면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는 무엇일까.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허락 화행의 대상이 되는 명제 내용의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의도성 상태는 대상이 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적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을 알아야 그 대상에 대한 심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16) 가. (엄마가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돼.

나. (의사가 환자에게)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됩니다.

(16가)는 청자에게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화자와 청자의 의문적 위상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허락이다. (16나)는 청자의 무지가 장애물로 작용하여 발생한 허락으로, 화자와 청자의 인식론적 위상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허락이다. (16가)에서 허락 화행의 대상이 되는 명제 내용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되다’이며, 이러한 명제 내용에 종결어미 ‘-어’가 결합하여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평서문이 형성된 것이다. (16나)의 명제 내용은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되다’이며, 명제 내용에 종결어미 ‘-습니다’가 결합하여 평서문이 형성된 것이다. 즉

허락 화행의 대상이 되는 명제 내용은 ‘-어도 되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미 [허락]의 양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6가), (16나)의 명제 내용을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다’와 같은 청자의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는 허락 화행의 간접 인용 양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허락 화행에서 간접 인용절로 안기는 것은 청자의 행위가 아니라, 청자의 행위에 대한 [허락]의 양태 의미가 포함된 명제이다.

(17)은 허락 화행과 허락 화행의 간접 인용을 보인 것이다. (17가)는 환자에게 존재하는 무지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허락 화행이다. (17가’)는 (17가)의 간접 인용을 보인 것인데, 평서문과 동일하게 인용의 ‘-다고’가 결합한다. (17나)는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언니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는 발화인데, (17나’)에서 해당 발화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와 같이 인용의 ‘-다고’가 쓰이고 있다. 이때 ‘-어도 되다’는 인용절로 안기는 명제 안에 들어가게 된다.

(17) 가.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됩니다.

가’. 의사가 환자에게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된다고 했어.

나.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돼.

나’. 엄마가 언니에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했어.

반면 지시 화행의 경우 간접 인용의 양상을 살펴보면 청자의 행위가 인용절로 안기게 된다. (18)은 요청 화행과 요청 화행의 간접 인용을 보인 것인데, (18가)는 의사가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으며, (18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행위’를 명령하고 있다. 이때 (18가’)에서는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다’라는 청자의 행위가 인용절로 안긴 채 인용의 ‘-라고’가 쓰이고 있다. (18나’)에서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라는 청자의 행위가 인용절로 안겨 있으며 인용의 ‘-라고’가 쓰이고 있다.

(18) 가.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세요.

가'. 의사가 환자에게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라고 했어.

나.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

나'. 엄마가 언니에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라고 했어.

만약 (17가)의 허락 화행의 대상이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다'라는 청자의 행위라면, 인용의 어미는 '-어도 되다' 뒤가 아닌 '복용하다' 뒤에 결합하여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라고 했어'와 같이 쓰여야 하는데, 이 경우 허락 화행의 의미가 사라지고 지시 화행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허락 화행의 대상이 되는 명제 내용은 '-어도 되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어도 되다' 뿐만 아니라, '-을 수 있다'를 통해 실현되는 허락 화행을 살펴봐도 명제 내용은 우언적 구성을 포함하는 형식이다. 우언적 구성 '-을 수 있다'도 '어도 되다'와 마찬가지로 명제 내용 안에 들어가며 '-다고'를 통해 인용된다. (19)의 허락 화행은 (20)과 같이 간접 인용된다. (21)과 같이 '-을 수 있다'가 명제 내용에서 제외될 경우 지시 화행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19)의 간접 인용으로 볼 수 없다.

(19)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20)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수 있다고 했어.

(21)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라고 했어.

이제 허락 화행의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의도성 상태를 알아보자. 2.3.2절에서 살폈듯이 단언은 명제 내용에 대한 믿음의 의도성 상태를 가지고, 지시는 명제 내용에 대한 소망의 의도성 상태를 가진다. (22)는 단언 화행을 보인 것이고, (23)은 지시 화행을 보인 것이다. (22)의 명제 내용은 '나는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다'이며, 이에 대한 화자의 의도성 상태는 믿음이다. (23)의 명제 내용은 '지금 당장 방을 치우다'이며, 이에 대한 화자의 의도성 상태는 청자가 '지금 당장 방을 치우는 행위'를 수행하기를 바라는 소망이다.

(22) 나는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어.



(23) 지금 당장 방을 치워.

(24~26)은 허락 화행을 보인 것이다. (24)의 명제 내용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되다’이며, (25)의 명제 내용은 ‘집에 가도 되다’이고, (26)의 명제 내용은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되다’이다. 이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화자의 의도성 상태가 소망이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4)의 화자는 ‘청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25)의 화자는 ‘청자가 집에 가도 된다’는 믿음을, (26)의 화자는 ‘청자가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24) 그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돼.

(25) 집에 가도 돼.

(26)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돼.

이때 허락의 발화 이후에 “왜?”라는 질문을 통해 허락 발화의 이유를 따져보아도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가 믿음임을 알 수 있다. (24’~26’)에서 청자 B가 A의 발화 이유를 물었을 때, A의 답변으로 ‘명제 내용을 믿으니까’는 자연스럽지만, ‘명제 내용을 원하니까’는 부자연스럽다.

(24’) A: 그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돼.

B: 왜?

A: ‘그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것’을 원하니까.

(25’) A: 집에 가도 돼.

B: 왜?

A: ‘네가 가도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네가 가도 된다는 것’을 원하니까.

(26') A: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돼.

B: 왜?

A: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된다는 것'을 원하니까.

허락 화행의 화자는 이처럼 명제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그 결과 허락 화행의 명제 내용은 사실로 여겨진다. 2.3.2절에서 살폈듯이 Kissine(2013)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명제 내용은 이미 세계에서 사실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잠재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반면 소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므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없는 사건이고 따라서 잠재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허락의 명제 내용은 화자가 이미 사실이라 믿고 있는 것으로, 비잠재적이다.

허락 화행의 명제 내용이 기정의 사실이라는 것은 허락 화행이 명사절로 바뀌는 양상을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다. 지시 화행의 경우 미정의 '-기'로 안기고, 단언 화행의 경우 기정의 '-음'으로 안긴다. 허락 화행의 경우 단언 화행과 유사하게 명사절로 안길 경우 '-음'으로 안기는 것을 볼 수 있다. (27)은 요청 화행을 보인 것인데 (27가)가 (27나)와 같이 명사절로 바뀔 때 '-기'는 자연스럽지만 '-음'은 부자연스럽다. (28)은 단언 화행을 보인 것인데 (28가)가 (28나)와 같이 명사절로 바뀔 때 '-음'은 자연스럽지만 '-기'는 부자연스럽다. (29)는 허락 화행을 보인 것으로, (29가)가 (29나)와 같이 명사절로 바뀔 때, (28)의 단언 화행과 동일하게 '-기'는 부자연스럽고 '-음'은 자연스럽다.

(27) 가.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어.

나. 두 가지 약을 함께 (먹길/\*먹음)

(28) 가.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었다.

나.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었길/ 먹었음)

(29) 가.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어도 돼.

나.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어도 (\*되길/됨)

이처럼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는 단언 화행의 의도성 상태와 동일한 명제 내용에 대한 믿음이다. 허락 화행 이후 발화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소망이 아닌 믿음이어야 한다는 점과 허락 화행이 명사절로 바뀔 때 기정의 명사형 어미 ‘-음’이 쓰인다는 사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행	의도성 상태	명사형 어미	예시
허락	믿음	-음	집에 일찍 가도 돼. → 집에 일찍 가도 됨.
단언	믿음	-음	그는 집에 일찍 갔어. → 그는 집에 일찍 갔음.
지시	소망	-기	집에 일찍 가라. → 집에 일찍 가기.

<표5> 허락, 단언, 지시 화행의 의도성 상태와 명사형 어미

### 3.3. 허락 화행의 갱신 잠재성

2.3.3절에서는 Portner(2018)에서 제시한 갱신 잠재성의 개념을 살피고 발화가 갱신하는 맥락의 유형에 따라 화행을 구분할 수 있음을 살폈다. 맥락의 유형은 크게 공통기반, 청자의 해야 할 행위 목록, 질문 집합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단언 화행은 공통기반을 갱신하고, 지시 화행은 청자의 해야 할 행위 목록을 갱신하며, 질문 화행은 질문 집합을 갱신한다.

허락의 발화가 갱신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지시 화행과의 비교를 통해 허락 화행이 갱신하는 맥락의 유형이 청자의 행위 목록이 아님을 밝히겠다. (30)은 운전자인 언니가 옆 좌석에 탄 동생에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발화로서, 지시 화행의 가장 대표적인 화행인 요청 화행을 보인 것이다. (31)은 (30)과 동일한 상황에서 언니가 동생에게 음악을 틀어도 된다고 허락한 발화이다. (30)의 요청 화행은

‘음악을 트는 행위’를 청자인 동생의 해야 할 행위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즉 (30)의 발화 이후 동생은 ‘음악을 트는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31)의 허락 화행은 ‘음악을 트는 행위’를 청자인 동생의 해야 할 행위 목록에 추가하지 않는다. (31)의 발화로 인해 청자가 반드시 음악을 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음악을 틀지 말지는 동생의 선택에 달려 있다.

(30) (운전 중인 언니가 옆에 앉은 동생에게) 음악 틀어줘.

(31) (운전 중인 언니가 옆에 앉은 동생에게) 음악 틀어도 돼.

허락 화행이 갱신하는 맥락이 청자의 행위 목록이 아니라면, 허락은 무엇을 갱신하는 것일까? 허락은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정보’를 화자와 청자의 공통기반에 추가함으로써 공통기반을 갱신한다. 허락 화행에서 청자가 행위 A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정보가 공통기반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청자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허락된 미래 행위 A를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허락의 발화 이후 청자의 행위 수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청자의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다. 허락 화행을 통해 청자의 행위 수행에 대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정보는 공통기반에 추가되며, 청자가 이러한 정보를 믿을 때 허락은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동생에게 언니가) 내 옷 입어도 돼.

(32)에서 화자는 동생에게 자신의 옷을 입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는데, 그 결과 청자는 자신이 언니의 옷을 입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언니의 옷을 입어도 된다’는 명제가 하나의 정보로서 공통기반에 추가되는 것이다. (32)의 허락 발화 이후에 동생이 언니의 옷을 입고 나간다면 이는 동생이 언니의 옷을 입어야 할 의무를 가져서가 아니라, 언니의 옷을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토대로 해당 행위를 수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허락 화행이 갱신하는 맥락 유형은 단언 화행과 동일한 공통기반이다. 그런데 이

때 단언 화행이 갱신하는 정보에는 제한이 없지만, 허락 화행이 갱신하는 정보는 특정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정보로 제한된다. (33)은 화자가 동생이 자신의 옷을 입고 나간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단언 화행으로, 그 결과 청자인 엄마는 동생이 언니의 옷을 입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단언의 결과 청자가 알게 되는 정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32)의 허락의 결과로 청자가 알게 되는 정보는 ‘언니의 옷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보, 즉 청자의 특정 행위 수행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로 제한되는 것이다.

(33) (엄마에게 언니가) 동생이 내 옷 입고 나갔어.

화행	갱신하는 맥락 유형	청자의 행위 수행 의무	행위 발생 이유
지시	청자의 해야 할 행위 목록	있음	청자의 의무
단언	공통기반	없음	.
허락	공통기반	없음	청자의 소망, 선택

<표6> 지시, 단언, 허락 화행이 갱신하는 맥락 유형과 청자의 행위 수행

## 4. 허락 화행의 실현 양상

4장에서는 한국어에서 허락 화행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허락 화행은 평서문으로 실현될 경우 맥락 요인의 개입과 청자의 추론을 적게 필요로 하여 화행의 직접성이 높다. 반면 명령문과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허락 화행으로 해석되기 위한 맥락 요인의 개입이 필요하며, 그만큼 청자의 추론 역시 요구된다. 허락 화행은 특정 맥락 요인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쉽게 명령문으로 실현될 수 있다. 반면 허락 화행이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매우 제한된 형태의 수사 의문문만이 가능하다. 허락 화행이 평서문으로 실현될 때 가장 직접성이 높은 것과 의문문으로 실현될 경우 수사 의문문으로만 가능한 점은 허락 화행이 단언 화행과 가지는 공통점으로, 허락이 단언의 하위 유형임을 뒷받침한다.

### 4.1. 평서문의 허락 화행

#### 4.1.1. -어도 되다

‘-어도 되다’는 허락 화행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구성이다. 그 이유는 ‘-어도 되다’가 가지는 [허락]의 양태 의미가 허락 화행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어도 되다’는 김지은(1998), 안주호(2005, 2008), 박재연(2015: 88-89) 등에서 [허락]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 구성으로 다루어졌으며, [의무]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어야 하다’와 함께 당위 양태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제시되었다.

(1) 가. 과제를 내일까지 제출해도 됩니다.

나. 지금 와도 돼.

다. 그 책 안 읽어도 돼.

(1)을 통해 ‘-어도 되다’가 가지는 [허락]의 양태 의미를 살펴보자. (1가)에서 ‘-어도 되다’는 ‘과제를 내일까지 제출하다’에 결합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허락]의 의미를 전달한다. (1나)에서는 ‘-어도 되다’가 ‘지금 오다’에 결합하면서 ‘지금 오는 행위’에 대한 [허락]의 의미를 나타낸다. (1다)에서는 ‘-어도 되다’가 ‘그 책을 안 읽다’라는 부정문에 결합하면서 ‘그 책을 안 읽는 행위’에 대한 [허락]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처럼 ‘-어도 되다’는 절에 결합하면서 선행절이 드러내는 행위에 대한 [허락]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때 선행절은 (1다)와 같이 부정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동혁(2016)에서는 ‘-어도 되다’의 의미를 인식 양태 의미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당위 양태 표현은 형용사와 계사에 결합할 수 없으나, ‘-어도 되다’는 결합하기 때문이다. (2가)는 ‘-어도 되다’가 형용사 ‘좁다’에 결합한 것이며, (2나)는 ‘-어도 되다’가 계사 ‘-이다’에 결합한 것이다. 이동혁(2016: 29)에서는 이를 근거로 ‘-어도 되다’의 의미를 “-어도 되다’의 선행절이 도입한 사태가 미래 사태를 실현시키기 위한 예외 조건이라는 화자의 판단”이라는 인식 양태 의미로 분석했다.

(2) 가. 좁아도 돼. 같이 앉으면 되지.

나. 나 펜 좀 빌려줘. 연필이어도 돼.

그러나 ‘-어도 되다’가 형용사와 계사에 결합한다고 해서 ‘-어도 되다’의 양태 의미가 [허락]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하나의 언어 형식은 인식 양태 의미와 의무 양태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Sweetser(1990)에서는 양태 조동사의 의미가 은유를 통해 내용 영역에서 인식 영역, 화행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3)의 ‘must’는 내용 영역에서 당위 양태적 의미를 지니지만, (4)의 ‘must’는 인식 영역에서 인식 양태적 의미를 지닌다.

(3) You must come home. (Sweetser, 1990: 57)

(4) You must have been home last night. (Sweetser, 1990: 57)

이처럼 ‘-어도 되다’ 역시 당위 양태 의미와 인식 양태 의미를 모두 지닐 수 있다. 동사에 결합하는 ‘-어도 되다’는 당위 양태 의미의 [허락]으로, 형용사와 계사에 결합하는 ‘-어도 되다’는 인식 양태 의미의 [허용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2)에서 보인 ‘-어도 되다’는 선행절의 사태에 대한 [허용의 판단]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있다. (2가)는 ‘좁은 상태’가 허용된다는 판단을, (2나)는 연필이 허용된다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어도 되다’는 어떻게 [허락]의 양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을까. Chung(2019)는 ‘-어도 되다’를 ‘-어도’와 평가 용언 ‘되다’로 구분하며 이들의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쳐지면서 [허락]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때 ‘-어도’는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조건절을 형성하고, ‘되다’는 ‘-어도’가 결합한 선행절에 대한 평가를 드러냄으로써 선행절이 허락된다는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5)에서 ‘-어도’는 ‘걱정하지 않다’에 결합하여 조건절을 형성하고, ‘되다’는 조건절에 제시된 ‘걱정하지 않는 행위’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내려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5)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Chung(2019)에서는 평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되다’는 ‘좋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때 ‘되다’는 ‘좋다’ 외에도 ‘괜찮다, 상관없다’ 등으로 대치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함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허락]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 ‘-어도 되다/좋다/괜찮다/상관없다’는 모두 허락 화행을 위해 쓰일 수 있다.

(6) 가. 집에 가도 된다/좋다/괜찮다/상관없다/\*나쁘다

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좋다/괜찮다/상관없다/\*나쁘다

이처럼 ‘-어도 되다’는 [허락]의 양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어도 되다’가 항상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도 되다’가 평서문으로 사용될 때



만 허락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어도 되다’가 의문문으로 사용될 때는 요청 화행 혹은 질문 화행으로 사용되며, 명령문으로는 사용되기 어렵다.

(7) 가. 나한테 물어봐도 돼.

나.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

다. 그 책 안 읽어도 돼.

(8) 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나.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다. 그 책 안 읽어도 되나요?

(9) 가. \*나한테 물어봐도 돼라.

나.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라.

다. \*그 책 안 읽어도 돼라.

(7)은 평서문으로 사용된 ‘-어도 되다’를 보인 것이다. (7가)의 화자는 청자에게 ‘화자 자신에게 물어보는 행위’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해당 행위를 허락하고 있으며, (7나)의 화자는 청자에게 존재하던 ‘여기서 담배 피우는 행위’의 장애물을 없앴으로써 해당 행위를 허락하고 있다. (7다)는 ‘그 책을 안 읽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존재하는 청자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허락하고 있다.

(8)은 의문문으로 사용된 ‘-어도 되다’를 보인 것으로, (8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청자에게 물어보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고 있다. 이때 (8가)의 발화가 수행하는 화행은 요청 화행이다. (8가)의 ‘-어도 되다’는 ‘물어보는 행위’에 대한 [허락]의 양태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나, [허락]의 의미는 요청 화행의 대상이 되는 명제가 포함하고 있을 뿐, 이때의 화행이 허락은 아니다. (8가)의 기능이 ‘물어보는 행위’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락 화행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8나)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8다)는 ‘그 책을 안 읽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9)는 ‘-어도 되다’가 명령문으로 쓰일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어도 되다’에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평서문으로 사용된 ‘-어도 되다’가 모두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어도 되다’의 선행절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을 포함할 경우, 안타까움, 후회와 같은 정표 화행을 수행한다. 허락 화행은 청자의 미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화행이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청자의 미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어도 되다’의 선행절이 ‘-었-’을 포함할 경우, 선행절의 명제 내용은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다. 이 경우 ‘되다’에는 ‘-는데’가 쉽게 결합한다.

(10) 너는 집에 갔어도 돼. / 집에 갔어도 되는데. / 집에 갔어도 됐다.

(11) 내가 걱정 안 했어도 됐겠다.

(10)의 선행절은 ‘너는 집에 갔다’로, 청자가 과거에 수행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는 반사실 사건이다. (10)은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 ‘네가 집에 가는 행위’를 조건절로 도입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청자가 해당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표 화행을 수행한다. (11)의 선행절은 ‘내가 걱정 안 했다’로, 화자가 과거에 수행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는 반사실 사건이다. 즉 (11)의 화자는 실제로는 ‘걱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11)과 같이 ‘-어도 되다’가 화자 자신의 반사실 행위와 결합할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화자의 후회와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정표 화행을 수행한다.

문장 유형	화행	예시	비고
평서문	허락	나한테 물어봐도 돼.	선행절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을 포함.
	정표	너는 집에 갔어도 돼.	
의문문	요청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질문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명령문	.	*나한테 물어봐도 돼라.	‘-어도 되다’는 명령문으로 사용 불가.

<표1> ‘-어도 되다’가 수행하는 다양한 화행

선행절에 ‘-었-’이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허락]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어도 되다’는 평서문으로 사용될 때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된다. 평서문으로 사용되는 ‘-어도 되다’가 수행하는 허락 화행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자. 3.1절에서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을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화자의 시도’로 분석하고, 이때 전제되는 장애물의 유형을 ‘금지로 인한 장애물’과 ‘무지로 인한 장애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도 되다’는 두 가지 유형의 장애물이 존재할 때 모두 사용될 수 있다.

(12)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가. (며칠 전에 숙제를 끝내지 않으면 잘 수 없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엄마: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에게) 오늘은 일찍 자도 돼.

나. 교사: (시험 중에) 매우 급한 경우에는 화장실에 다녀와도 됩니다.

(12)는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12가)에서는 며칠 전에 있었던 ‘숙제를 다 끝내지 않으면 잘 수 없다는 경고’가 아이에게 자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때 엄마는 ‘-어도 되다’를 통해 아이가 오늘은 일찍 자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12가)의 발화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금지로 인한 장애물은 제거된다. (12나)에서는 ‘시험 중에는 나갈 수 없다는 관습적 규칙’이 학생들이 시험 중에 화장실에 가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

로 작용하고 있다. 교사는 ‘-어도 되다’를 통해 매우 급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행위를 청자가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관습적 규칙이라는 장애물은 제거된다.

(13)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가. (집에 가도 된다는 선생님의 종례를 듣지 못한 민수에게)

민수야, 너 집에 가도 돼.

나. 식당 직원: (손님에게) 건물 밖에 있는 흡연 부스에서는 담배 피우셔도 됩니다.

(13)은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13가)에서 민수는 선생님의 종례를 듣지 못해서 집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화자는 민수가 귀가 가능 여부를 모르는 것이 집에 가는 행위의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민수에게 ‘집에 가도 된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수에게 존재하던 무지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 (13나)는 손님이 식당에 처음 왔으므로 식당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직원이 손님에게 흡연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고 있다. 직원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손님이 흡연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동혁(2015)에서는 ‘-어도 되다’가 정보 제공 혹은 허락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위에서 살핀 (12)와 같은 화행은 허락으로 보고 (13)과 같은 화행은 단언으로 보았다. 이동혁(2015)에서는 ‘-어도 되다’가 쓰인 두 화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선행 발화의 기능’을 제시했다. 선행 발화가 ‘정보 요구’의 기능을 하면 ‘-어도 되다’는 단언의 화행을 수행하고, 선행 발화가 ‘허락 요구’의 기능을 하면 ‘-어도 되다’는 허락 화행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선행 발화의 기능	‘-어도 되다’가 수행하는 화행
정보 요구	정보 제공
허가 요구	허가

<표2> 이동혁(2015: 8)의 ‘-어도 되다’의 인접 쌍 환경

이동혁(2015: 6)에서는 (14)와 같은 예시를 제시하며 A의 발화가 정보 요청일 수도 있고 허락 요청일 수도 있다고 했다. B의 발화 이후 A가 흡연 행위를 곧바로 하지 않는다면 A는 정보를 요구한 것이며, 흡연 행위를 곧바로 한다면 A는 허락을 요구한 것이라 해석한다. A가 정보를 요구했다면 이어지는 B의 발화에서 ‘-어도 되다’는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A가 허락을 요구했다면 B의 발화에서 ‘-어도 되다’는 허락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14) A: 아저씨, 여기서 담배 한 대만 피울 수 있을까요?

B: 음, 피워도 돼.

이동혁(2015)에서 살핀 ‘-어도 되다’는 선행 발화를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반응 화행으로의 ‘-어도 되다’의 쓰임을 살핀 것이다. 그러나 ‘-어도 되다’는 선행 발화 없이 시작 화행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즉 청자의 어떠한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도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에게 특정 장애물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어도 되다’를 통한 허락 화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동혁(2015)에서 살핀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하는 ‘-어도 되다’와 ‘허락’의 기능을 하는 ‘-어도 되다’는 각각 ‘무지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어도 되다’와 ‘금지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어도 되다’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장애물의 유형에 따라 허락 화행을 기술하면 선행 발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 화행으로 제시되는 ‘-어도 되다’의 화행을 분석할 수 있으며, ‘-어도 되다’가 수행하는 두 가지 화행을 모두 허락 화행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어도 되다’가 금지로 인한 장애물과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맥락에서 모두 허락 화행을 수행할 수 있음을 살폈다. ‘-어도 되다’는 이처럼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허락하는데, 복수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여러 개의 행위를 허락하는 화행을 수행하기도 한다.

(15) 가. 너는 집에 가도 되고 밥 먹으러 가도 돼.

나. 너는 집에 가도 되고, 밥 먹으러 가도 되고, 영화 보러 가도 되고, 커피 마시러 가도 돼.

(15가)는 ‘집에 가다’라는 절에 ‘-어도 되다’가 결합한 문장과 ‘밥 먹으러 가다’라는 절에 ‘-어도 되다’가 결합한 문장이 이어져 있는 복문이다. (15가)는 청자가 ‘집에 가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는 장애물과 ‘밥 먹으러 가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두 가지 행위를 허락하고 있다. ‘-어도 되다’는 (15나)와 같이 더 많은 장애물을 없애면서 더 많은 행위를 허락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16) 가. 너는 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나. 너는 집에 가도 돼.

다. 너는 집에 안 가도 돼.

(16가)는 ‘집에 가는 행위’와 ‘가지 않는 행위’를 모두 허락하는 발화이다. (16가)는 서로 상반되는 두 행위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청자가 미래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V-어도 되고 not V-어도 되다’와 같은 구성은 (16나)와 같은 ‘V-어도 되다’ 혹은 (16다)와 같은 ‘not V-어도 되다’와 같은 구성에 비해 청자의 소망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약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6나)의 화자는 청자가 ‘집에 가는 행위’를 소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청자에게 존재하는 ‘집에 가는 행위’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해주며, (16다)의 화자는 청자가 ‘집에 안 가는 행위’를 소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허락한다. 이에 비해 (16가)는 청자가 집에 가는 행위를 소망할 수도 있고 집에 안 가는 행위를 소망할 수도 있다는 화자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청자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가 약한 것이다.

#### 4.1.2. -을 수 있다

한국어의 우연적 구성 ‘-을 수 있다’는 인식 양태의 [가능]의 의미와 동적 양태의 [능력]의 의미를 지닌다.<sup>6)</sup> ‘-어도 되다’ 구성과 마찬가지로 ‘-을 수 있다’ 구성 역시 인식 양태 의미와 당위 양태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17) 가. 그는 집에 있을 수 있어.

나.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어.

(18) 가. 그는 수영을 할 수 있어.

나.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어.

(17)은 ‘-을 수 있다’가 가지는 [가능]의 인식 양태 의미를 보인 것이다. (17가)에서 ‘-을 수 있다’는 ‘그가 집에 있는 사태’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고 있으며, (17나)에서 ‘-을 수 있다’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 사태’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18)은 ‘-을 수 있다’가 가지는 [능력]의 동적 양태 의미를 보인 것이다. (18가)에서 ‘-을 수 있다’는 주어인 ‘그’에게 수영을 하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며, (18나)에서 ‘-을 수 있다’는 주어인 ‘나’에게 자전거를 타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낸다.

박재연(2003: 207)에서도 ‘-을 수 있다’가 [가능성 판단]의 인식 양태적 의미와 [능력]의 행위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sup>7)</sup> 안주호(2004: 211)에서는 ‘-을 수 있다’ 구성이 [가능성]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며 인식 양태에서는 [추측]을 나타내고 의무 양태에서는 [능력]과 [허락]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나익주(2020)에서는 당위 양태 의미로 [능력], [내재적 가능성],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 인식

6) 동적 양태는 양태의 큰 범주에서는 당위 양태에 속할 수 있다. 박재연(2004)에서는 양태를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양분했는데, 이때 행위 양태는 기존의 당위 양태와 동적 양태를 포괄하는 것이다.

7) 박재연(2003)에서는 기존의 ‘의무 양태’라는 용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행위 양태’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양태 의미로 [개연성 추측]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sup>8)9)</sup>

박재연(2003)에서는 ‘-을 수 있다’의 의미로 [허락]의 양태 의미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안주호(2004), 나익주(2020)에서는 ‘-을 수 있다’가 [허락]의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재연(2003)에서 ‘-을 수 있다’의 의미로 [허락]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유는 아마 [허락]의 의미가 ‘-을 수 있다’의 일차적 의미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나익주(2020: 20)에서도 ‘-을 수 있다’가 가지는 [허락]의 의미는 ‘-을 수 있다’의 의미에 화용적 요소가 더해져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익주(2020: 20)에서 언급했듯이 ‘-을 수 있다’가 가지는 [허락]의 의미는 맥락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청자의 추론을 통해 획득되는 의미이다. (19)는 나익주(2020: 20)에서 제시한 예로, ‘-을 수 있다’가 [허락]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19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에 청자가 앉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으며, (19나)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다. 나익주(2020: 20)에서는 ‘-을 수 있다’가 [허락]의 의미를 획득할 때 개입하는 맥락 요인으로 화자의 사회적 권한 요인을 제시했다. ‘-을 수 있다’가 일차적으로 [능력]의 의미를 나타낼 때, 화자의 사회적 권한이 청자보다 높아서 화자가 청자에게 해당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허락]의 의미로 읽힌다는 것이다.

(19) 가. 너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나는 지금 갈 테니까.

나. 여기서 담배 피울 수 있다. (나익주, 2020: 20)

---

8) 나익주(2020: 17)에서는 ‘당위 양태’ 대신 ‘뿌리 양태(root modality)’라는 용어를 채택했으나, 본고에서는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위 양태’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9) 나익주(2020: 19)에서는 ‘내재적 가능성’을 “화자의 심적 태도와 무관하게 대상이나 상황의 내재적 속성에서 나오는 잠재성”이라 설명하며, 인식 양태 의미인 ‘개연성(추측)’과는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익주(2020: 19)에서는 “당위 양태의 ‘내재적 가능성’과 인식 양태의 ‘가능성 추측’의 구분이 언제나 가능한 것도 아니며,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도 빈번하다”고 설명한다. 나익주(2020: 19)에서는 다음의 예문을 들며 해당 예문에 쓰인 ‘-을 수 있다’는 ‘맞을 가능성이 있음’의 해석과 ‘맞을지도 모름’의 해석이 모두 가능함을 보였다.

예: 설치고 다니다가 너 두드려 맞을 수 있다. (나익주, 2020: 19)



‘-을 수 있다’가 가지는 [허락]의 의미가 [능력]의 의미를 바탕으로 화용적 추론을 통해 획득되었다는 사실은 범언어적으로 [능력]과 [허락]의 형식적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Palmer(2001: 77)에서는 “많은 언어에서 [허락]과 [능력] 사이의 형식적 구분이 없다”고 설명하며, 영어의 ‘can’을 예로 들고 있다. (20)은 그가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can’이 [능력]의 의미를 드러낸다. 반면 (21)은 그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can’이 [허락]의 의미를 드러낸다.<sup>10)</sup> 영어의 ‘can’ 역시 [능력]과 [허락]의 의미를 모두 지니는 것이다.

(20) He can run a mile in under four minutes. (ability)

그는 1마일을 4분 안에 뛸 수 있다.

Palmer(2001: 77)

(21) He can escape. (there is nothing to stop him)

그는 도망칠 수 있다.

Palmer(2001: 77)

이처럼 하나의 언어 형식은 [능력]과 [허락]의 의미를 모두 가지는 경우가 많다. 안주호(2004: 212)에서는 [능력]의 양태 의미와 [허락]의 양태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주어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어 내부’에 있는지 ‘주어 외부’에 있는지를 나누었다. 주어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 주어의 행위가 가능할 경우 ‘-을 수 있다’의 의미를 [능력]으로 보았고, 주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주어의 행위가 가능할 경우 [허락]으로 보았다. (22가)에서 주어인 ‘나’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어인 ‘나’ 내부에 존재하므로 (22가)의 ‘-을 수 있다’의 의미는 [능력]이다. 반면 (22나)의 두 번째 발화에서 주어는 생략된 ‘학생들’이다. 이때 ‘학생들’이 집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주어인 ‘학생들’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집에 가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화자인 ‘교사’의 발화에 존재한다.

(22) 가.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10) Palmer(2001)에서도 [허락]의 의미를 드러낼 때 ‘청자의 행위를 막을 장애물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를 봐도 [허락]이 장애물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교사: (학생들에게) 수업 끝났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청자의 화용적 추론을 통해 [허락]의 의미를 가지는 ‘-을 수 있다’ 구성도 ‘-어도 되다’와 마찬가지로 평서문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허락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23)은 ‘-을 수 있다’가 평서문으로 사용된 예를 보인 것이다. (23가)는 ‘-을 수 있다’가 인식 양태의 [가능]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화자의 추측을 드러낸다. 이때의 화행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단언이다. (23나)는 ‘-을 수 있다’가 [능력]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화자에게 수영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때의 화행도 단언이다. (23다)에서는 청자가 집에 가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화자의 허락이므로 ‘-을 수 있다’는 [허락]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23다)는 청자에게 존재하던 장애물, 즉 청자가 집에 갈 수 없었던 이유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때의 화행은 허락이다.

(23) 평서문

가. A: 그가 어디에 갔는지 아니?

B: 그는 공원에 갔을 수 있어. [가능]

나.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능력]

다. 숙제를 다 했구나. 너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허락]

(24)는 ‘-을 수 있다’가 의문문으로 사용된 예이며, (24가)의 ‘-을 수 있다’는 인식 양태의 [가능]의 의미를, (24나)에서는 동적 양태의 [능력]의 의미를, (24다)에서는 당위 양태의 [허락]의 의미를 지닌다. (24가, 나, 다)에서 ‘-을 수 있다’가 가지는 양태 의미는 모두 다르나, 이들이 수행하는 화행은 모두 질문 화행이다. 화자는 자신이 모르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질문 화행의 기능이다.

(24) 의문문

가. 그가 공원에 갔을 수 있어? [가능]

나. 너는 수영을 할 수 있어? [능력]

다. 숙제를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갈 수 있나요? [허락]

(25)는 ‘-을 수 있다’가 명령문으로 쓰인 예를 보인 것이다. ‘-을 수 있다’도 ‘-어도 되다’와 마찬가지로 명령문으로는 사용되기 어렵다. (25가)는 [가능]의 의미를 가지는 ‘-을 수 있다’이며, (25나)는 [능력]의 의미, (25다)는 [허락]의 의미를 가지는 ‘-을 수 있다’이다. 이때 (25가)의 [가능]과 (25다)의 [허락]의 의미를 지니는 ‘-을 수 있다’의 경우 명령문으로 쓰일 수 없으며, (25나)의 [능력]의 의미를 지니는 ‘-을 수 있다’의 경우 명령문으로 쓰이는 것이 매우 어색하다. (25나)와 같이 [능력]의 의미를 지니는 ‘-을 수 있다’가 명령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수행하는 화행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 정표 화행이다.

(25) 명령문

가. \*그가 공원에 갈 수 있어라. [가능]

나. ?나도 수영 좀 잘할 수 있어라. [능력]

다. \*너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라. [허락]

문장 유형	화행	예시	‘-을 수 있다’의 양태 의미
평서문	허락	너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허락]
	단언	그는 공원에 갔을 수 있어.	[가능]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능력]
의문문	질문	그가 공원에 갔을 수 있어?	[가능]
		너는 수영을 할 수 있어?	[능력]
		저는 이제 집에 갈 수 있나요?	[허락]
명령문	·	*그가 공원에 갈 수 있어라.	[가능]
		*너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라.	[허락]
	정표	?나도 수영 좀 잘할 수 있어라.	[능력]

<표3> ‘-을 수 있다’가 수행하는 다양한 화행

그런데 ‘-을 수 있다’는 ‘-어도 되다’보다 허락 화행을 위한 쓰임에 제약을 가진다. ‘-어도 되다’는 ‘금지로 인한 장애물’과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맥락에

서 허락 화행을 위해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으나, ‘-을 수 있다’는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맥락에서 더 빈번히 사용되며,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색한 경우가 많다.

(26)은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을 수 있다’가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예이다. (26가)의 청자는 음식을 먹어봐도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26나)에서 청자는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해도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때 (26가, 나)의 화자는 청자에게 ‘자유롭게 맛볼 수 있다는 정보’, ‘이곳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자가 가지고 있던 무지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해준다. 이로 인해 청자는 ‘자유롭게 맛보는 행위’, ‘이곳에 주차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을 수 있다’는 (27)과 같이 ‘-어도 되다’로 대체될 수 있다.

(26) 가. (마트에서 지나가는 고객에게) 자유롭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나. (가게 주인이 고객에게) 이곳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27) 가. (마트에서 지나가는 고객에게) 자유롭게 맛보셔도 됩니다.

나. (가게 주인이 고객에게) 이곳에 주차하셔도 됩니다.

(28)은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맥락에서 ‘-을 수 있다’가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예이다. (28가)에서는 ‘숙제를 끝내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는 규칙’이 청자가 집에 가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한다. (28나)에서는 ‘자신의 음식이 아니라는 장애물’이 동생이 언니의 음식을 먹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 경우 ‘-을 수 있다’의 사용이 어색하다. 반면 (29)와 같이 ‘-어도 되다’는 동일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28) 가. (숙제를 끝내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는 규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숙제를 끝내지 못한 학생에게) 교사: ?오늘은 집에 갈 수 있어.

나. (자신의 음식을 다 먹은 동생에게) 언니: ?내 뭉까지 먹을 수 있어.

(29) 가. (숙제를 끝내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는 규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숙제를 끝내

지 못한 학생에게) 교사: 오늘은 집에 가도 돼.

나. (자신의 음식을 다 먹은 동생에게) 언니: 내 뭉까지 먹어도 돼.

‘-을 수 있다’가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허락 회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을 수 있다’가 가지는 [허락]의 의미가 [능력]의 의미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능력]은 안주호(2004)에서 분석했듯이 ‘주체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 특정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허락의 장애물 중 ‘금지로 인한 장애물’은 행위 주체인 청자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고, ‘무지로 인한 장애물’은 행위 주체인 청자 내부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즉 ‘-을 수 있다’가 가지는 [허락]의 의미는 [능력]의 의미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을 수 있다’는 ‘주체 내부의 요인’인 ‘무지로 인한 장애물’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을 수 있다’는 화자와 청자의 공통기반에서 부정적인 행위로 전제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허락의 상황에서도 부자연스럽다. (30)은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허락의 상황에서 ‘-을 수 있다’가 쓰인 것이다. (30가)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으며, (30나)에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조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는데, 이 두 행위는 발화 이전의 공통기반에서 이미 부정적인 행위로 전제되어 있다. 이때 (30가, 나)와 같이 ‘-을 수 있다’의 사용은 어색하다. 반면 동일한 맥락에서 (31)의 ‘-어도 되다’는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30)과 같은 상황에서 ‘-을 수 있다’의 사용이 어색한 이유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부정적인 행위라 전제하고 있는 행위의 장애물은 주로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30) 가.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은 술 마실 수 있어.

나. (교사가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오늘은 잘 수 있어.

(31) 가.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은 술 마셔도 돼.

나. (교사가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오늘은 자도 돼.

### 4.1.3. 어휘적 실현

허락 화행은 어휘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허락]의 의미를 지니는 수행 동사 ‘허락하다, 허가하다’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하며, [가능]의 인식 양태 의미와 [능력]의 동적 양태 의미를 지니는 ‘가능하다’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 [1] 허락하다, 허가하다

김응모(2000)에서는 ‘허락성’의 의미를 가지는 한국어 자동사를 『국어대사전』, 『새우리말큰사전』, 『우리말 큰사전』, 『유의어·반의어 사전』에서 추출하여 33개의 동사를 제시했다.<sup>11)</sup> 그러나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므로 본고에서는 [허락]의 의미를 가지는 수행동사로 ‘허락하다’와 ‘허가하다’만을 살펴볼 것이다.

수행동사를 통한 허락 화행의 실현은 문어와 구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문어에서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되는 수행동사의 양상을 살펴보자. (32)는 공문서에 ‘허가하다’가 쓰인 예시이다. 공문서의 경우 허락 발화의 청자/독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다수의 청자/독자를 대상으로 허락 화행이 수행된다. (32가)의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화자/필자는 청자/독자의 ‘건설 행위’를 허락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32가)의 발화를 통해 청자/독자가 ‘건설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한다. (32가)를 통해 청자/독자는 장애물이 제거되었음을 알게 된다. (32나) 역시 해당 문장을 통해 화자/필자는 청자/독자에게 ‘진입 행위’의 장애물을

11) 김응모(2000)에서 제시한 ‘허락성’을 가지는 자동사 목록

종소원하다	허락되다	탈급하다	윤유되다	승낙되다
종자원하다	온허락하다	의원면관하다	윤하되다	허심하다
수응하다	용허되다	의원면직되다	칙허하다	준허되다
응낙하다	허용되다	인가되다	접두하다	수락되다
용인되다	허급하다	인허되다	허장하다	목인되다
인용되다	허시되다	허가되다	재허하다	의시하다
인허되다	허여되다	재가하다		

제거하고 ‘진입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허가하다’는 공문서, 안내문 등의 허락 화행에 사용될 수 있다.<sup>12)</sup>

- (32) 가. 위 위치에 건설 허가  
나. 차량 진입 허가

수행동사는 특정 상황 맥락의 구어에서 쓰이기도 한다. (33)은 ‘허락하다’와 ‘허가하다’가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예를 보인 것이다. (33가)의 화자는 비행기의 착륙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비행기의 기장에게 착륙 행위를 허락하고 있고, 발화 이전에 청자에게는 착륙 행위에 대한 장애물이 있었다. (33가)의 발화를 통해 청자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은 제거되었고 청자는 착륙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3나)는 상관인 화자가 청자인 병사들에게 약탈 행위를 허락하고 있으며, 발화 이전 상관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던 청자는 발화 이후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약탈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33) 가. 착륙을 허가한다. 행운을 빈다. (드라마 ‘원더풀 라이프’ 3부)  
나.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평양성 내 약탈을 허락한다. (영화 ‘평양성’)

(33)과 같이 ‘허락하다, 허가하다’의 수행동사가 구어에서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된다. (33)은 모두 화자가 청자보다 해당 행위에 관해 절대적으로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33가)는 비행기의 착륙 허가와 관련한 상황으로 반드시 화자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며, (33나)는 군대에서의 상관과 하관의 관계로 매우 격식적인 상황이다.

---

12) ‘모두의 말뭉치(2019), 문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안내문, 공문서 등의 문어에서는 ‘허락하다’가 허락 화행을 수행한 예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허가하다’가 ‘허락하다’보다 격식적인 쓰임을 가지기 때문인 듯하다.

## [2] 가능하다

‘가능하다’ 혹은 ‘가능’은 ‘-을 수 있다’와 마찬가지로 [가능]의 인식 양태 의미와 [능력]의 동적 양태 의미를 가진다. ‘가능하다’는 ‘-을 수 있다’와 동일한 양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가 수행하는 허락 화행 역시 ‘-을 수 있다’가 수행하는 허락 화행과 유사하게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34)는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가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것을 보인 것이다. (34가)에서 청자는 테라스 이용 여부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지로 인한 장애물을 가진다. (34가)의 발화로 인해 청자는 테라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결과, 테라스 이용 행위가 가능해진다. (34나)에서는 병원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환자가 진료의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지로 인한 장애물을 가지며, 간호사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장애물을 제거해준다.

(34) 가.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테라스 이용 가능합니다.

나.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귀가 가능하십니다.

(35)는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가능하다’의 사용을 보인 것인데, 이 경우 ‘가능하다’의 쓰임이 매우 어색하다. (35)는 환자의 소유물을 청자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상황인데, 환자의 소유물과 관련된 허락의 상황에서 청자의 장애물 유형은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다. 이처럼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가능하다’를 통한 허락 화행의 수행은 어렵다.

(35) 가. ?내 빵 먹는 거 가능해.

나. ?내 옷 입는 거 가능해.

표지판, 포스터, 안내 문구 등의 문어에서는 ‘가능’ 혹은 ‘가능하다’가 허락을 위해 매우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는 표지판, 포스터, 안내 문구와 같은 문어에서는 우연적 구성과 같이 긴 언어 형식보다는 길이가 짧은 어휘의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



며, 표지판과 안내 문구가 허락하는 상황에서 전제되는 장애물은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즉 표지판과 안내 문구는 그 문구를 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특정 행위를 허락하는 것이다.

- (36) 가. 흡연 가능
- 나. 주차 가능
- 다. 취식 가능

## 4.2. 명령문의 허락 화행

### 4.2.1. 명령문

평서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은 우언적 구성 ‘-어도 되다’와 ‘-을 수 있다’, 또는 ‘허락하다, 허가하다’와 ‘가능하다’와 같이 [허락]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특정 표현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나 명령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은 특정한 표현 없이도 허락 화행의 맥락 요인을 만족한다면 청자의 추론을 통해 허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지수(2016: 86)에서는 전형적인 명령형 종결어미가 허락 화행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37)은 이지수(2016: 86)에서 들고 있는 예시이다. (37가)와 같이 ‘-어도 되다’를 통해 수행되는 허락 화행은, (37가)와 동일한 맥락을 상정한 (37나~마)에서 명령형 종결어미로도 수행될 수 있다. 즉 명령문은 별도의 언어적 장치 없이도 상황 맥락에 따라 허락 화행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 (37) 선생님이 문밖에서 대기 중이던 학생에게
- 가. 이제 들어와도 좋습니다.
- 나. 이제 들어오세요.
- 다. 이제 들어오너라.
- 라. 이제 들어와라.

마. 이제 들어와.

이지수(2016: 86)

명령문이 수행하는 명령 화행과 허락 화행을 비교해보자. (38)과 (39)는 동일한 명령문이 맥락에 따라 허락 화행과 명령 화행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38)에서는 명령문이 허락 화행을 수행하고 있고, (39)에서는 명령문이 명령 화행을 수행한다. (38)에서 교사의 발화 이전에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자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는 행위에 대해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38)의 교사의 발화를 통해 학생이 자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는 장애물은 제거되며, 학생은 자는 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39)에서 아이는 발화 이전에 자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장애물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자는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부모의 발화 이후에 아이가 자는 행위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38)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자.

(39) (잘 시간이 넘었는데도 놀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자.

이처럼 허락 화행이 별도의 문법적 형식 없이 명령문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가 허락 화행을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간접 화행이 모두 그러하듯이, 동일한 문장 유형은 충분히 서로 다른 유형의 화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허락 화행이 별도의 문법적 장치 없이 명령문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허락 화행이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허락 화행이 명령문을 통해 실현되는 것은 별도의 맥락적 단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청자의 추론을 필요로 하는 간접 화행이다.

허락 화행이 명령문을 통해 실현될 때 필요한 맥락 요인은 조건절을 통해 문면에 드러날 수도 있다. 화자는 조건절을 통해 허락 화행을 위한 맥락 요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허락 화행을 위한 적절한 맥락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건절이 허락 화행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첫 번째 맥락 요인은 ‘장애물의 존재’ 요인이다. (40)에서 청자가 집에 가는 행위에 대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40)은 명령 화행일 수도 있고 허락 화행일 수도 있다. 즉

(40)을 허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맥락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41)은 조건절을 통해 허락 화행을 위한 맥락 요인을 문면에 제시하고 있다. (41)의 조건절 ‘숙제 다 했으면’은 ‘숙제를 다 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는 금지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알려준다. 또한 (41)의 조건절은 허락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청자가 숙제를 다 하여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에만 청자는 집에 가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40) 집에 가라.

(41) 숙제 다 했으면 집에 가라.

허락 화행으로의 해석을 위해 조건절이 제시할 수 있는 두 번째 맥락 요인은 ‘청자의 소망’이다. 화자는 청자가 해당 행위를 소망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허락 화행의 적절성을 위해 청자의 소망을 조건절을 통해 전제한다. 이 경우 명령문이 허락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지시 화행의 경우 화자가 소망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 이전에 청자의 소망이 전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허락 화행은 청자의 소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화행이기 때문에 조건절을 통해 청자의 소망이 전제된다면 명령문의 화행이 허락 화행으로 분명해진다.

(42) 가. 들어와요.

나. 먹어.

다. 책 사.

(43) 가. 원한다면 들어와요.

나. 배고프면 먹어.

다.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책 사.

(42)의 경우 조건절이 없는 명령문으로, 맥락 요인을 알지 못하면 해당 발화의

화행이 명령인지 허락인지 알 수 없다. 반면 (43)의 경우 조건절을 통해 청자의 소망을 전제함으로써 허락 화행으로 해석하기 위한 맥락 요인을 문면에 드러낸다. 명령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에서 조건절은 허락 화행을 위해 필요한 맥락 정보를 문면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4.2.2. -든지/-든가/-거나

명령문을 통해 실현되는 허락 화행 중에는 선행절에 허락의 발화수반력이 할당되는 경우가 있다. Bisang(2007: 132-133)에서는 모든 절에 발화수반력의 할당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Portner(2018: 123)에서는 발화수반력이 절 단위에 할당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착하여 문장 유형이라는 용어 대신 절 유형(clause typ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4.2.2절에서는 ‘-든지/-든가/-거나’를 통해, 4.2.3절에서는 ‘-되’를 통해 명령문의 선행절이 허락의 발화수반력을 가지는 경우를 살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든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든지’의 두 가지 의미는 모두 허락 화행과 연결된다.

(44)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의 예시이다. (44)에서 화자는 청자가 ‘집에 가는 행위’와 ‘학교에 가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존재하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허락하고 있다. 이때 ‘해라’가 지시하고 있는 것은 허락한 두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집에 가라” 혹은 “학교에 가라”와 같이 하나의 행위를 명령하는 지시 화행과는 다르다.

(44)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45)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의 예문이다. 이때 화자는 청자의 행위를 가능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자에게 존재하던 장애물을 제거해준다. 또한 후행절 “네 맘대로 해라”에는 화자가 허락한 행위들 중 청자가 무엇을 선택하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해당 발화의 화행이 지시가 아닌 허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5)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간에 네 맘대로 해라.

(44), (45)와 같이 ‘-든지’가 연결어미로 쓰이는 경우 모문은 명령문의 문장 유형을 취하며 문장 전체에 허락 화행이 할당된다. ‘-든지’에 후행하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지시하는 것은 청자에게 선택 행위를 명령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시 화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후행하는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등이 생략되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며 허락 화행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든지’가 사용된 명령문은 허락 화행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든지’는 문말에 위치할 수도 있다. 문숙영(2015: 10-18)에서는 탈중속화를 겪은 ‘-든지’를 다루었는데, 주절에 사용된 ‘-든지’는 연결어미 ‘-든지’와는 다른 의미와 분포를 보이며, 이때 복원할 수 있는 후행 동사는 ‘해라, 해’ 정도로 제한된다고 했다. 문숙영(2015: 16-17)에서는 탈중속화가 일어난 ‘-든지’가 나타내는 문장 유형은 전형적인 명령문과는 다르며, ‘-든지’는 단언, 정표, 명령 화행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든지’와 유사한 의미와 쓰임을 갖는 ‘-든가’에 대해서도 문숙영(2015: 16)에서는 (46)과 같은 예를 들며 ‘-든가’가 쓰인 발화가 “이 물 써”와 같이 명령형 어미가 쓰인 발화보다 지시(directive)의 힘이 약하다고 설명한다. “이 물 쓰든가”에서 ‘-든가’가 청자에게 미래 행위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46) 이 물 쓰든가.

‘-든지/-든가’는 청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

는 점에서 허락 화행에 기여한다. 선행절에 할당된 허락의 발화수반력은 발화 전체의 화행으로 확장된다. ‘-든지/-든가’ 뒤에 ‘해’, ‘해라’ 등의 명령형 종결어미가 위치하지만 이는 선행절에서 제시한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명령 화행으로 볼 수는 없다. 탈종속화가 일어난 ‘-든지/-든가’가 문말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허락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거나’의 경우 선택지를 나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든지/-든가’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든지/-든가’에 비해 문말에 위치하는 빈도가 적어 탈종속화가 덜 이루어진 연결어미로 볼 수 있다. ‘-거나’가 연결어미로 쓰이는 경우 ‘해라’가 후행하며 허락 화행을 수행할 수 있지만, 문말에 위치한 경우에는 허락 화행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47가)는 연결어미 ‘-거나’ 뒤에 ‘해라’가 후행하는 명령문인데, 부모가 아이에게 ‘밖에 나가는 행위’와 ‘게임을 하는 행위’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주고 있으므로 문장에 할당된 화행은 허락이다. (47나)는 ‘-거나’가 문말에 위치한 경우인데 선행 발화가 없는 경우에는 어색한 문장이다. “나 놀아도 돼?”와 같이 허락을 요청하는 선행 발화가 있는 경우 (47나)와 같은 대안 제시가 허락을 위해 사용될 수는 있으나 단독으로 허락 화행을 수행하기는 힘들다.

(47) 숙제를 끝낸 아이에게 부모가

가. 밖에 나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해라.

나. ?밖에 나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거나’가 문말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로 단언 화행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거나’는 ‘-든지/-든가’에 비해 허락 화행과의 연결 강도가 약한 듯하다. (48)은 ‘-거나’가 문말에 위치한 경우 단언 화행을 쉽게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48)의 ‘-거나’는 화자가 자신의 가능한 미래 행위를 나열함으로써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8) 가. 밥 먹거나 파스타 먹거나.

나. 집에서 하거나 학교 가서 하거나.

‘-든지/-든가/-거나’는 모두 가능한 선택지를 나열하는 기능을 하며 허락 화행에 기여한다. 이들 연결어미가 허락 화행에 사용되는 이유는 이들이 가지는 선택지 나열의 의미가 청자에게 해당 행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것은 청자가 해당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든지/-든가/-거나’는 허락에 전제되는 금지와 무지 두 가지 장애물의 유형 중 금지의 장애물이 존재할 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능력]의 양태 의미에서 기인한 [허락]의 의미를 가지는 ‘-을 수 있다’와 ‘가능하다’가 무지로 인한 장애물의 유형이 존재할 때 선호되는 것과 반대된다.

(49) 청자가 흡연 가능한지를 모르고 있을 때

가. 담배 피워도 돼.

나. \*담배 (피우든지/피우든가/피우거나) 해.

(50) 화자가 담배 연기를 싫어하여 청자에게 흡연 행위가 금지되어 있을 때

가. 담배 피워도 돼.

나. 담배 (피우든지/피우든가/피우거나) 해.

(49)는 청자에게 무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49)에서 청자는 흡연 가능 여부를 모르고 있는데, 이때 (49가)와 같이 ‘-어도 되다’는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반면, (49나)와 같이 ‘-든지/-든가/-거나 해’의 사용은 어색하다. (50)은 청자에게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50나)를 봤을 때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든지/-든가/-거나’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든지/-든가/-거나’가 금지로 인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이유는 ‘-든지/-든가/-거나’ 뒤에 ‘해’, 또는 ‘해라’와 같은 의무론적 권한

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명령문이 오기 때문이다. 앞서 살폈듯이 무지로 인한 장애물은 인식론적 권한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명령문이 후행하는 ‘-든지/-든가/-거나’의 쓰임이 제한된다.

#### 4.2.3. -되

‘-되’가 결합한 선행절에 허락 화행이 할당되는 경우 후행절에는 항상 금지 혹은 명령의 화행이 할당되거나 의무 양태 의미가 드러난다. 후행절이 단언 화행을 수행하며 의무 양태 의미를 가지지 않는 평서문일 경우, ‘-되’가 결합한 선행절은 허락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다.

(51) 가. 집에 가되, 남은 숙제는 꼭 해와라.

나. 먹되 다 먹진 말아라.

다. 물을 충분히 사용하되 낭비하지는 않아야 한다.

(51가)는 선행절에서 ‘집에 가는 행위’를 허락하면서 후행절에서는 ‘숙제를 하는 행위’를 명령하고 있다. (52나)는 선행절에서 청자에게 먹는 행위를 허락하면서 후행절에서 ‘다 먹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52다)는 선행절에서 물을 충분히 사용하는 행위를 청자에게 허락하고 있으나, 후행절에서는 ‘-어야 하다’ 구성을 통해 의무 양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51)의 선행절에 제시된 행위는 모두 청자의 소망이 전제된 행위들이다. 화자는 청자가 ‘집에 가는 행위’, ‘먹는 행위’, ‘물을 충분히 사용하는 행위’를 소망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51)과 같은 발화를 하게 된다. 허락 화행의 맥락 요인인 청자의 소망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51)의 ‘-되’는 선행절에 제시된 행위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것이며 허락 화행에 기여하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 데 쓰는 연결어미이며, 둘째, 어떤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뒤에 덧붙이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며, 셋째, 뒤에 오는



말이 인용하는 말임을 미리 나타내어 보일 때 인용 동사에 붙여 쓰는 연결어미이다. 이때 허락 화행을 위해 쓰이는 ‘-되’는 첫 번째 뜻을 가지는 ‘-되’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의미를 가지는 ‘-되’로 볼 수도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첫 번째 의미의 ‘-되’가 허락 화행을 수행한다고 본다면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립적이라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선행절은 특정 행위를 허락하지만 후행절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한다는 것은 선행절에서는 청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후행절에서는 청자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대립적이다. 그러나 첫 번째 의미 기술에서도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다고 기술하여 ‘-되’의 의미를 단언 화행을 수행하는 ‘-되’로 제한하고 실제 예문에서도 (52)와 같은 예문만을 제시하여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되’의 예를 보이지 않았다.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되’는 대립적인 ‘사실’이 아닌, 대립적인 ‘청자의 미래 행위’를 잇는다.

(52) 가. 그는 키는 작되 마음은 크다.

나. 말은 잘하되 실천은 하지 않는다.

다. 햇별은 강하되 바람이 불어 답지는 않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두 번째 의미의 ‘-되’가 허락 화행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되’는 선행절에서 큰 범위의 행위를 허락하고 후행절에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제시하면서 허락된 행동에 포함되는 작은 범위의 행동을 명령하거나 금지하여 허락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3)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추어 적는다.

(53)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 번째 의미의 예시로 제시한 예문이다. (53)의 후행절에는 ‘어법에 맞추어 적는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단언 화행이 할당되어 있으며, 여기에 어떠한 의무 양태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 경우 선행절인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에는 허락 화행이 할당되지 않으며 정보 전달을 위한 단언 화행이 할당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서는 두 번째 의미를 기술하며 선행절의 기능을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뜻풀이의 예문으로도 모두 후행절이 의무 양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단언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만을 제시해 선행절이 모두 단언 화행을 수행하는 사실 기술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듯이 허락 화행이 할당되는 경우는 ‘사실’이 기술되는 것이 아니며, ‘청자의 미래 행위’가 제시된다.

‘-되’가 허락을 위해 사용되는 이유는 화자가 청자의 행위 수행의 권한을 일부만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54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집에 가는 행위를 허락하는 발화이며 (54나)는 화자가 청자에게 집에 가는 행위를 허락하면서도 숙제를 할 것을 명령하는 발화이다. (54나)는 화자가 자신이 허락한 청자 행위의 범위가 ‘집에 가는 행위’까지이며, ‘숙제를 하는 행위’는 허락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임을 드러낸다.

(54) 가. 집에 가도 돼.

나. 집에 가되 숙제는 해와라.

(55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마음껏 먹는 행위를 허락하는 발화이며, (55나)는 화자가 청자에게 마음껏 먹는 행위를 허락하면서도 ‘동생의 몫을 먹는 행위’는 금지하는 발화이다. (55나)의 경우 화자는 청자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분명히 제한함으로써 후행절에서 제시한 행위는 허락된 행위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화자가 청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되’를 사용하는 것이다.

(55) 가. 마음껏 먹어도 돼.

나. 마음껏 먹되 동생 몫은 먹지 마라.

### 4.3. 의문문의 허락 화행

마지막으로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의 양상을 살필 것이다. 허락 화행은 의문문으로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 [허락]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어도 되다’가 의문문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발화가 수행하는 화행은 청자의 허락을 요청하는 요청 화행이다.

(56) 가. 들어가도 될까요?

나.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어도 될까요?

(56가)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이 ‘들어가는 행위’를 수행해도 될지에 대해 묻는 동시에, ‘들어가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56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두 가지 약을 함께 먹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56)의 화자는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56)의 발화가 수행하는 화행은 허락으로 볼 수 없으며, (56)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56)이 수행하는 화행은 질문 화행과 요청 화행이다.

그러나 매우 제한된 형식의 의문문을 통해서도 허락 화행이 수행되기도 한다. 허락 화행은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수사 의문문이라 하더라도 ‘안 되기는 왜 안 돼?’ 구성과 ‘-을 수 없기는 왜 없어?’ 구성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

(57) 가. 들어오는 게 안 되기는 왜 안 돼?

나. 두 가지 약을 함께 먹는 게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57)은 ‘안 되기는 왜 안 돼?’ 구성이 사용된 수사 의문문이다. (57가)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청자가 ‘들어오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수사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역설함으로써 청자가 들어오는 행위를 강하게 허

락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57나)에서 화자는 청자가 ‘두 가지 약을 함께 먹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역설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허락하고 있다. (57)의 ‘안 되기는 왜 안 돼?’ 구성은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역설함으로써 청자에게 해당 행위를 허락하는 것이다.

(58) 가. 들어올 수 없기는 왜 없어요?

나.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을 수 없기는 왜 없어요?

(58)은 ‘-을 수 없기는 왜 없어?’ 구성이 사용된 수사 의문문이다. (58가)에서 화자는 청자가 ‘들어올 수 없는 이유’, 즉 ‘들어오는 행위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역설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허락하고 있으며, (58나)에서 화자는 청자가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을 수 없는 이유’, 즉 ‘두 가지 약을 함께 먹는 행위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역설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허락하고 있다. ‘-을 수 없기는 왜 없어?’ 구성도 ‘안 되기는 왜 안 돼?’ 구성과 마찬가지로 청자가 해당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안 되기는 왜 안 돼?’ 구성과 ‘-을 수 없기는 왜 없어?’ 구성은 모두 수사 의문문을 형성하며 청자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로 청자의 허락 요청 발화에 대한 대답으로 나타난다. 평서문과 명령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은 담화의 시작에 위치하는 시작 화행으로 자유롭게 제시될 수 있으나,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은 선행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응 화행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59) 가. 교사:?(시작 화행) 집에 가는 게 안 되기는 왜 안 돼?

나. 학생: (시작 화행) 집에 가도 될까요?

교사: (반응 화행) 그럼. 안 되기는 왜 안 돼?

(60) 가. 언니:?(시작 화행) 음악을 틀 수 없기는 왜 없어?

나. 동생: (시작 화행) 음악을 틀 수 있을까?

언니: (반응 화행) 그럼. 틀 수 없기는 왜 없어?

(59가)는 ‘안 되기는 왜 안 돼?’ 구성이 시작 화행으로 제시되며 청자의 ‘집에 가는 행위’를 허락하는 발화인데, 이 경우 선행 맥락에서 ‘집에 가는 행위’에 대한 청자의 요구 또는 소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색한 발화가 된다. (60가)는 ‘-을 수 없기는 왜 없어?’ 구성이 시작 화행으로 제시된 것인데, (59가)와 마찬가지로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한 청자의 요구나 소망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색한 발화가 된다.

반면 (59나)와 (60나)에서 ‘안 되기는 왜 안 돼?’ 구성과 ‘-을 수 없기는 왜 없어?’ 구성을 통한 교사와 언니의 허락 발화는 (59가), (60가)의 허락 발화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수사 의문문을 통한 허락 발화 이전에 학생과 동생의 요청 발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즉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수사 의문문 ‘안 되기는 왜 안 돼?’와 ‘-을 수 없기는 왜 없어?’ 구성은 시작 화행으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반응 화행으로 제시되었을 때 더 자연스러운 발화인 것이다.

이처럼 허락 화행이 의문문을 통해 실현될 때 수사 의문문만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은 지시 화행과의 큰 차이이다. 지시 화행은 의문문을 통해 실현될 때, 물론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으나, 대체로 청자의 ‘예/아니오’의 답변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을 통해 실현된다.

(61) 가. 학생: 집에 가도 될까요? (요청)

교사: 응. 가도 된다. (허락)

아니. 아직 안 돼. (금지)

나. 민영: 소금 좀 주시겠어요? (요청)

은아: 네. 여기 있습니다. (수락)

아니요. 너무 멀리 있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거절)

(61가)에서 학생은 의문문을 통해 집에 가는 행위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데, 학생의 질문은 교사의 ‘응’ 또는 ‘아니’의 답변을 요구하므로 판정 의문문이다. 이때 교사가 ‘응’이라 답할 경우 해당 발화는 학생의 귀가 행위를 허락하는 허락 화행을 수행하며, ‘아니’라고 답할 경우 학생의 귀가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화행을 수

행한다. (61나)에서 민영은 의문문을 통해 은아에게 소금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민영의 요청은 청자인 은아의 ‘예’ 혹은 ‘아니오’의 답변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며, 은아가 ‘예’라고 답할 경우 민영의 요청에 대한 수락 화행을 수행하며,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거절 화행을 수행한다.

지시 화행은 이처럼 청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일반 의문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허락 화행과는 다르다. 반면 단언 화행은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점에서 허락 화행과 동일한 면모를 보인다.

(62) 가. 그는 오늘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어.

나. 그는 오늘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한 게 아니겠어?

다. \*그는 오늘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어?

(62가)는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인 기술 화행이 평서문으로 실현된 것으로 ‘그는 오늘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어’는 명제를 기술하고 있다. (62나)는 (62가)와 동일한 화행을 수행하는 수사 의문문이다. ‘-게 아니겠어?’와 같은 구성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만 화자가 이미 사실이라 믿는 명제를 기술할 수 있다. (62다)와 같은 판정 의문문의 경우 기술 화행을 수행하지 않으며, ‘그는 오늘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어’는 명제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 화행을 수행하게 된다.

(63) 가. 그는 잘못을 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해.

나. 그는 잘못을 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다. \*그는 잘못을 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해?

(63가)는 단언 화행 중 주장 화행이 평서문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참이라 생각하는 ‘그는 잘못을 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63나)에서는 ‘-지 않겠어?’ 구성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63다)의 판정 의문문은 ‘그는 잘못을 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청자의 생각을 묻고 있는 질문 화행을 수행한다. 즉 단언 화행도 허락

화행과 마찬가지로 청자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과 의도성 상태, 갱신 잠재성을 살핌으로써 허락 화행이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임을 밝히고, 한국어에서 허락 화행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살폈다.

허락 화행은 청자의 행위 수행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시 화행이 청자의 행위 수행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허락 화행은 청자의 행위 수행에 존재하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청자가 해당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허락 화행은 화행 판별의 기준이 되는 의도성 상태와 갱신 잠재성의 측면에서도 지시 화행과의 차이를 보였다. 허락 화행은 ‘믿음’의 의도성 상태를 가지며, ‘공통기반’을 갱신하는 기능을 한다.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와 갱신 잠재성은 단언 화행과 동일하였으며, ‘소망’의 의도성 상태를 가지고, ‘청자의 해야 할 행위 목록’을 갱신하는 지시 화행과는 달랐다. 본고는 허락 화행이 지시 화행과 가지는 차이를 살피고 허락 화행이 단언 화행과 가지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허락 화행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1절에서는 화행과 발화 행위, 발화수반력, 발화 효과의 개념을 살핌으로써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화행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허락 화행의 판별에 앞서 Leech(1983)을 중심으로 화행의 주요 유형을 살폈다. 또한 단언 화행의 두 부류를 ‘기술 화행’과 ‘주장 화행’으로 나누어 살핌으로써 허락 화행이 보이는 두 가지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2절에서는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의 개념을 살피고, Searle(1975)의 관점에 따라 ‘협력의 원리’와 ‘화행의 적정 조건’을 기반으로 한 간접 화행의 해석 과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화행이 직접성과 간접성의 정도를 가짐을 확인했다. 또한 허락 화행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살피며 한국어에 허락문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한국어의 허락 화행은 평서문의 ‘-어도 되다’를 통해 실현될 때 직접성이 가장 높음을 보였다.

2.3절에서는 허락 화행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Searle(1969)의



‘본질 조건’, Searle(1983)의 ‘의도성 상태’, Portner(2018)의 ‘갱신 잠재성’의 개념을 살폈으며, 화행의 주요 유형인 단언 화행과 지시 화행의 본질 조건, 의도성 상태, 갱신 잠재성을 제시했다.

3장에서는 2.3절에서 제시한 화행 판별의 기준을 적용하여 허락 화행을 정립했다. 3.1절에서는 맥락의 변화를 고려하여 허락 화행의 본질 조건을 ‘청자의 행위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화자의 시도’로 규정하였고, 이때의 장애물은 ‘금지로 인한 장애물’과 ‘무지로 인한 장애물’로 나누어 살폈다. 3.2절에서는 허락 화행의 대상이 되는 명제 내용의 특징과 함께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를 살폈다. 허락 화행의 명제 내용은 기정의 사실이고, 허락 화행의 의도성 상태는 단언 화행의 의도성 상태와 동일한 ‘믿음’임을 보였다. 3.3절에서는 허락 화행이 갱신하는 맥락의 유형이 단언 화행이 갱신하는 맥락의 유형과 동일한 ‘공통기반’임을 주장했다.

4장에서는 허락 화행의 실현 양상을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으로 나누어 살폈다. 허락 화행은 평서문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허락 화행의 직접성이 가장 높은 언어 형식으로는 [허락]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우언적 구성 ‘-어도 되다’와 수행동사 ‘허락하다, 허가하다’를 제시했다. 허락 화행을 위해 사용되는 [능력], [가능]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을 수 있다’와 ‘가능하다’는 [허락]의 양태 의미를 지니는 언어 형식보다 청자의 추론을 더 많이 필요로 하므로 화행의 직접성이 다소 떨어진다.

명령문 혹은 의문문을 통해 실현되는 허락 화행은 평서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보다 더 많은 맥락 요인의 개입과 청자의 추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행의 간접성이 높다. 허락 화행이 명령문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 ‘청자에게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믿음’, 혹은 ‘청자가 해당 행위를 수행하기를 소망한다는 화자의 믿음’이 맥락 요인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명령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 중에는 선행절에 허락 화행이 할당되는 경우도 있었다. 선택지 나열의 기능을 하는 ‘-든지/-든가 /-거나’와 범위를 특정하는 연결어미 ‘-되’가 선행절에 할당되는 허락 화행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을 살폈다.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허락 화행은 청자의 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는 단언 화행이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허락 화행이 단언 화행의 하위 유형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지시 화행은 판정/설명 의문문과 같이

청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일반 의문문으로 쉽게 실현되기 때문에 허락 화행과는 차이를 보였다.

화행은 무수히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살핀 언어 형식들 외에 다른 형식들도 허락 화행을 위해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허락 화행을 수행하는 보다 다양한 언어 형식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장 유형이 존재하지 않아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주변 화행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현화(2007),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권, 이중언어학회, 1-26.
- 고대영(2014), 「화행과 요청」, 『배달말』 55권, 배달말학회, 1-23.
-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 구영은·김지연·홍문표·김영길(2018), 「한국어 수업 대화의 화행 분석과 화행 자동분류를 위한 언어학적 기반연구」, 『정보과학회논문지』 45권 8호, 한국정보과학회, 807-815.
- 김강희(2018), 「한국어 지시화행의 담화문법 연구-의미, 형태, 사용에 대한 맥락 분석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강희(2020), 「한국어 지시화행의 체계에 대한 소고」, 『국어국문학』 191, 국어국문학회, 5-40.
- 김응모(2000), 「요구, 허락, 거절 자동사의 내용 연구」, 『外大論叢』 21권 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225-251.
- 김정민(2016), 「‘만’과 ‘도’의 이차 의미」, 『언어학연구』 41, 한국중원언어학회, 135-155.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김태인(2019),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익주(2020), 「양태 구문 ‘-르 수 있-’의 다의성 동기」, 『담화와 인지』 27, 담화·인지언어학회, 1-25.
- 노대규(1995), 「한국어의 허락문 연구」, 『애산학보』 17, 애산학회, 1-32.
- 노대규(2002), 『한국어의 화용 의미론』, 국학자료원.
- 문숙영(2015), 「한국어 탈종속화의 한 종류」,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1-39.
- 박재연(2003), 「한국어와 영어의 양태 표현에 대한 대조적 고찰: 부정과 관련한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2호, 이중언어학회, 199-222.
-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41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01-118.
- 박재연(2009), 「주어 지향적 양태와 관련한 몇 문제」,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1-25.
-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국어학』 62, 국어학회, 167-197.
- 박재연(2013), 「한국어 의도 관련 어미의 환유적 의미 확장」, 『국어학』 68, 국어학회, 253-288.
- 박재연(2015), 「양태와 관습적 간접 화행의 환유적 연계 -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국어학』 73, 국어학회, 69-108.
- 박재연(2019), 『한국어 어미의 의미』, 집문당.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 박철우(2017), 「담화 단위와 의미」, 『한국어학회』 77, 한국어학회, 1-36.
- 손혜옥(2016), 「한국어 인식양태 표지의 사용 양상」, 『언어사실과 관점』 3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49-285.
- 안주호(2004), 「‘-르 수 있-’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한국언어문학』 53권, 한국언어문학회, 207-232.

- 안주호(2005), 「'-어야 하-'류 구성의 문법적 특성과 의미」, 『국어교육』 118, 한국어교육학회, 363-393.
- 안주호(2008), 「양태와 양태동사의 기능에 대하여」, 『형태론』 10권 1호, 박이정, 195-212.
- 윤평현(2005), 「접속어미 '-되'에 대한 고찰」, 『어문논총』 16,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1-38.
- 이동혁(2015), 「'-어도 되다'의 대화 기능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50, 한국어의미학회, 1-25.
- 이동혁(2016), 「'-어도 되다'의 양태 의미와 허가 화행, 그리고 공손성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말글』 69, 우리말글학회, 23-48.
- 이동혁(2017), 「의무 양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51권, 우리말학회, 137-159.
- 이선영(2014), 「명제와 양태」, 『한국어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303-320.
-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冠嶽語文研究』 26권, 서울대학교, 317-339.
- 이종철(2004), 『국어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도서출판 역락.
- 이준희(2000), 『간접화행』, 도서출판 역락.
- 이지수(2016), 「한국어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용(2015), 『한국어 정표화행 연구』, 도서출판 역락.
-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27-153.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323-359.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장경희(1995), 「국어의 양태 범주의 설정과 그 체계」, 『언어』 20권 3호, 한국언어학회, 191-205.
- 장석진(1990), 「화용과 문법」, 『언어』 15권, 한국언어학회, 499-538.
- 정우현(2018), 「한국어 양태의 표현수단 체계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4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61-381.
- 정우현(2019), 「보조사 '도'의 초점 투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수·이필영(2005), 「구어자료의 정보화: 간접화행 판단의 제문제」, 『한국언어문화』 28호, 한국언어문화학회, 47-67.
- 정종수(2013), 「한국어 약속화행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33권,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9-47.
- 정종수(2019), 「한국어 화행의 전략 연구-관용 문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77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31-56.
- 정희자(2002),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 함병호(2011), 「한국어 양태 보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Austin, J. L. (1992), 『말과 행위』(김영진 역), 서광사.

Bach, K. & Harnish, R. (1979),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 Cambridge: The MIT Press.

Bisang W. (2007), Categories that make finiteness: discreteness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and some of its repercussions, Nikolaeva, I.(ed.), *Finiteness -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New York,

115-137.

- Bybee, J. L. (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ybee, J. L. &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ung Woojin (2019), Decomposing Deontic Modality: Evidence from Korean, *Journal of Semantics* 36, 665-700.
- Davies, Eirlys (1986), *The English Imperative*, London: Croom Helm.
- Fraser, Bruce (1975), Hedged Performative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Academic Press, New York, 187-210.
- Foley, W. A. & R. van Valin Jr. (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zdar, G. (1979), *Pragmatics: Implicature, Presupposition, and Logical Form*, Academic Press, London.
- Hindelang, Götz (1982), 『화행론 입문』(김갑년 역), 한국문화사.
- Huang Yan (2006),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Huang Yan (2006), 『화용론』(이해운 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Jespersen, O. (1924), 『문법철학』(이환목, 이석무 역), 한신문화사.
- Kissine, Mikhail (2013), *From utterances to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ch, Geoffrey N.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Addison Wesley Longman Publishing, New York.
-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Lyons, J. (1995), *Linguistic Seman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nther, K. & Thornburg, L. (1998), A cognitive approach to inferencing i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30, 755-769.
- Panther, K. & Thornburg, L. (2003), Metonymy and Pragmatic Inferencing, *Pragmatics & cognition* 13, 433-438.
- Portner, P. (2004), The semantics of imperatives within a theory of clause types, *Proceedings of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Vol 14*, CLC Publications, Cornell University, 235-252.
- Portner, P. (2009),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Portner, P. (2018), *Mood*, Oxford University Press.
- Sadok, J. M. (1974), *Toward a Linguistic Theory of Speech Acts*, Academic Press, New York.
- Searle, John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ohn R. (1971), *The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Searle, John R. (1975), Indirect Speech Act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Academic Press, New York, 59-82.
- Searle, John R. (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ohn R. (1983), *Intentional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lnaker, Robert C. (1999), *Context and Content -essays on intentionality in speech and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 Strawson, P. F. (1964), Intention and Convention in Speech act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73, 439-460.
- Sweets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 A Study on Korean Permitting Speech Acts

Cho, Yeonso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at permitting speech acts are a subtype of assertives by examining the 'essential conditions', 'intentional state', and 'update potential' of permitting speech acts, and to examine the specific realization aspects of permitting speech acts in Korean.

Permitting speech acts have been treated as a subtype of directive speech acts in that they are the reason for the listener's performance. However, unlike directives that are the direct reason for listeners to perform an action, permitting speech acts allow listeners to choose the action by removing obstacles that existed in the listener's performance of the action. In addition, permitting speech acts differ from directives

in terms of the intentional states, and update potential, which are the criteria for judging speech acts,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permitting speech acts from directives.

In chapter 2, the basis for analyzing permitting speech acts was laid. In Section 2.1, the concept of speech acts to be studied in this paper was established by examining the concepts of locutionary acts, illocutionary forces, and perlocutionary effects. Prior to the identification of permitting speech acts, the main types of speech acts were examined, focusing on Leech (1983). In addition, by dividing the two types of assertive into 'descriptive speech acts' and 'claim speech acts', the basis for explaining the two aspects of permitting speech acts was laid.

Section 2.2 examines the concepts of direct and indirect speech acts, and examines the interpretation process of indirect speech act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and 'felicity conditions' according to Searle (1975).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peech acts has a degree of directness and indirectness.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directness and indirectness of permitting speech acts, it was revealed that permitting sentence types do not exist in Korean, and the directness of permitting speech acts in Korean was the highest when it realized through '-eodo doida' in declaratives.

Section 2.3 examines the concepts of Searle (1969)'s 'essential conditions', Searle (1983)'s 'intentional states' and Portner (2018)'s 'update potential' to establish criteria for determining permitting speech acts. In addition, essential condition, intentional state, and update



potential of assertives and directive speech acts, which are the main types of speech acts, were presented.

In Chapter 3, permitting speech acts were established by applying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speech acts presented in Section 2.3. Section 3.1 defined the essential conditions of permitting speech acts as 'the speaker's attempt to remove obstacles to the listener's performance'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context, and examined the obstacles divided into 'obstacles due to prohibition' and 'obstacles due to ignorance'. In Section 3.2, it was examined that the intentional state of permitting speech a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itional contents of the permitting speech acts. It was shown that the propositional contents of the permitting speech acts were established facts, and the intentional state of the permitting speech act was the 'belief' that is the intentional state of the assertives. Section 3.3 asserted that the type of context updated by permitting speech acts is the 'common ground' as the same type of context updated by assertives.

In Chapter 4, the aspects of realization of permitting speech acts were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declaratives, imperatives, and interrogatives. Permitting speech acts are realized most directly through declaratives. As the language form with the highest directness of permitting speech acts, '-eodo doida' and the performative verbs 'allow, permit', which have the mode meaning of [permission], were suggested. Permitting speech acts can be realized by '-l su issda' and 'be possible' which have the meaning of [possibility] and [capaciti].

The directness of permitting speech acts through '-l su issda' and 'be possible' is somewhat less than the language forms that have the meaning of [permission], because it requires more reasoning from the listener.

The indirectness of the permitting speech acts through the imperatives and interrogatives is high because it requires more contextual factors and listener's reasoning than the speech acts through the declaratives. If permitting speech acts are realized through a imperatives, it must exist as contextual factors that 'the speaker's belief that an obstacle exists for the listener' or 'the speaker's belief that the listener wishes to perform the action'. In some cases, permitting speech acts are assigned to the protasis. It has been shown that '-deunji/-deunga/-geona', which has functions to offer a list of options, and '-doi' which specifies the scope can contribute to the permitting speech acts assigned to the protasis.

Lastly, we looked at permitting speech acts that are realized through interrogative sentences. Permitting speech act, which is realized through interrogatives, is only possible through rhetorical questions that does not require an answer from the listener. This is similar to the aspect in which assertive speech acts are realized as interrogative sentences. It can be seen as a basis for showing that permitting speech acts are a subtype of assertives. Directives is different from permitting speech acts because it is easily realized as a general question that requires an answer from the listener.

keywords : Permitting speech act, sentence type, essential condition,  
intentional state, update potential

Student Number : 2020-20576